

연구보고서 201-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방안



최현수 · 오미애 · 서광국 · 한창근 · 김예슬 · 전지수

**【책임연구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기초연금 2017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동연구진】**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광국** 중환자활센터 사무처장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예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전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자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정가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386-5 93510

## 제출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2017.5)한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체계 구축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 목 차

제1장 서 론 .....	3
제2장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함의 및 이론적 기반 .....	13
제1절 사회투자정책으로서 자산형성 지원 .....	13
제2절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의 이론적 기반: 제도적 저축이론 .....	23
제3장 외국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사례 및 최근 동향 .....	37
제4장 우리나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한계 .....	65
제5장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	95
제1절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추진 기본방향 .....	95
제2절 우리나라 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 .....	100
제6장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설계 .....	111
제7장 자산형성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	121
참고문헌 .....	137



제 1 장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Sherraden(1991)에 의해 저소득층의 저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제시된 후, 저소득층에게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와 경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
- 자산형성지원사업(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의 개념
  - 참여가구가 저축 계좌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고정/변동)을 저축하면 정부·민간매칭금을 지원기준(매칭비율)에 따라 함께 적립한 후, 사업 참여 종료시점까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식
    - 기존에 금융권에서 운용되는 상품 중 추가 이차지원, 세제 지원 방식과 차별화되는 직접 지원방식임
- 각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집단 대상의 자산형성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로 처음 시작된 이래, 아동 대상 CDA(Child Development Account) 형태로 확대 시행됨
- 우리나라에서도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계좌),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시행 이후, 최근 일부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등) 및 지자체(서울, 경기 등)에서 특정 정책집단을 대상으로 유사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도입이 검토된 바 있으나, 2007년 시설 아동 중심으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 지원계좌)’이 제한적으로 시행

○ 2010년에 이르러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으로 사업 참여 3년 이후 탈 수급을 조건으로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처음 희망키움통장이 도입되었음

- 최근, 근로유인형 정책 연계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2013년 내일키움통장(자활사업참여자), 2014년 희망키움통장 II(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됨

• 2017년 신규 참여대상 3만1천명을 포함하여 총 약 12만8천명이 참여하여 지원받음

○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한계에 대한 문제 인식

- 기존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적용대상 포괄성 한계
- 자산형성지원 사업 간 또는 소득보장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 민간 참여의 한계로 인한 매칭금의 정부예산 의존 확대
- 지자체 자체 사업과의 중복 조정 및 연계 문제
-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체계 및 사례관리의 한계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 과정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소득보장정책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사회투자정책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생애주기별로 다

양한 정책대상에 확대 시행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저소득층의 탈 수급·탈 빈곤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저축을 통해 저축행태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함

○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저소득 근로가구 중심으로 근로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저축한 만큼 정부 및 지자체 또는 민간이 함께 저축해주는 계좌를 정책대상별로 도입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함

-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EITC),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자산형성지원제도와 연계함으로써 근로를 통한 적극적 참여 유인 및 자산형성 지원규모 확대 방안을 모색함

□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파악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생애주기별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지원 사업 전달체계 마련을 통한 관리 및 운영 통합 지원,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 간 운영체계 및 지원방식 조정 등 자산형성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마련을 통해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함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방안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개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능력과 자립의지를 지닌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유도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지원체계 구축방안 모색 필요</li> <li>-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통일부 등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및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 및 사업내용, 성과와 한계 검토</li> <li>• 정책대상 범위 설정 및 대상별 자산형성 지원사업 설계, 자산형성 지원사업 관련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시</li> </ul>

## 2. 연구내용

- 외국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사례 및 최근 동향 분석
  - 외국의 자산형성사업 운영사례(정책대상, 지원방식, 지원수준, 전달체계 등) 비교 검토 및 최근 동향 분석
- 국내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 사례 및 선행연구 검토
  -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사업내용 검토를 통한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연계 대상 사업 도출
  - 국내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체계 및 성과 관련 선행연구 조사 검토를 통한 기존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 상의 한계점 도출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상 범위 설정
  - 생애주기별 저소득층 규모 및 자산보유 실태 등 정책수요 검토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방향 및 정책대상 범위 설정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설계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상별 사업 운영체계 구성
    - 참여대상 선정기준 및 자격유지 기준
    - 저축방식, 적립기간, 매칭비율
    - 대상 선정 및 지원방식 확대 개편 가능성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간 연계 및 추진 방안 제시
    - 생애주기별 사업유형 및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근로에 따라 저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간 연계방안 마련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관리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안 제시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관련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는 공공-민간 협업 체계 등 거버넌스 제시
  - 보건복지부를 컨트롤타워로 현행 중앙자활센터 중심 관리 운영체계를 활용하되, 사례관리와 금융교육 등 노후준비지원 사업 연계 등을 고려하여 설계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운영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관련 통계 기반 구축방안 제시
- 빈곤예방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법 제정 검토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지원체계 구축방안 주요 연구내용 구성

**2장.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함의 및 이론적 기반**  
**3장. 외국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사례 및 최근 동향**  
**4장. 우리나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한계**  
**5장.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6장.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실제**  
**7장. 자산형성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사례 및 성과 관련 선행연구 조사 검토
- 현장조사
  - 국내외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사례 파악 및 현장 방문조사 실시
- 통계분석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 대상 범위 설정

#### □ 자문회의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관련 전문가, 정부·지자체 담당자 중심으로 의견 수렴

##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우리나라 자산형성지원 현황 제공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 및 발전방안 모색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저소득층 탈 수급·탈 빈곤 지원 및 빈곤 예방, 참여 과정에서 저축 경험을 통한 인식 및 행태 변화
  - 저축을 통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및 근로행태 변화
  - 금융교육 참여 등 노후준비 지원 및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지원



## 제 2 장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함의 및 이론적 기반

제1절 사회투자정책으로서 자산형성 지원

제2절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의 이론적 기반

: 제도적 저축이론



# 2

## 저소득층 자산형성 << 지원정책의 함의 및 이론적 기반

### 제1절 사회투자정책으로서 자산형성 지원

#### 1. 사회투자정책

- 복지국가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과 정치적 영향에 의해 축적된 여러 정책 수단들의 종합적 결과물로, 기존의 복지국가는 퇴직, 실업, 건강, 그리고 사고 등의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소득보전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 복지제도임
- 소득보장제도는 장기간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기초로 한 효과적인 제도였으나 소득보장제도는 시장실패에서 발생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 주는 제도이지 성장이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제도가 아님
  - 다시 말해서, 소득보전은 시민들의 역량(capabilities)을 향상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소득보전을 지원해주는 소극적인 사회정책임(Sherraden, 2002, 2003, 2016).
- 21세기 사회정책은 변화와 개혁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는데, 소득에 기초한 정책들이 충분한 역할을 해주던 산업사회는 이미 지나가고 있음
- 복지국가는 고령화, 근로 인구층의 감소, 그리고 양극화 현상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우선으로 한 경제 상황변화는 전통적 복지국가를 위협하고 있음

- 새로운 경제에서 시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제하고 결과적으로 일생동안 사회정책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만 하며, 후기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적극적(active) 사회정책임
  - 이는 발전과 참여를 증가시키고 개인들과 가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함 (Sherraden, 2003)
- 최근 사회정책의 변화 및 개혁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음
  - Neil Gilbert는 사회적 급여자격(entitlements)을 중요시하는 이전의 제도에서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국가(enabling state)로 변화하고 있다고 요약하고 있음
    - 이것은 시민들을 공공 서비스와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수동적 수혜자로 보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제도 및 국가를 의미함 (Gilbert & Gilbert, 1989; Gilbert, 1995)
  - 영국 신노동당의 새로운 정치적 정책 강령인 “사회투자국가”는 Anthony Giddens의 제 3의 길: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길 (1998)에서 처음 사용되었음
    - 약간은 다른 의미이지만 일맥상통된 의미에서, Jim Midgley (1999)는 지금의 변화과정을 ‘생산성(productivity)’ 중심의 과정으로 보고 있고 사회투자의 등장을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사회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에 나타난 유럽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데 이용되고 있음 (Dufour & Morrison, 2005; Taylor-Gooby, 2004)

## 2. 사회투자국가의 주요 특징

- 기존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사회투자국가의 기본적 특징을 몇 가지 제시할 수 있음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연관성, 인간의 잠재적 능력 개발에 초점, 치료적 접근보다는 예방적 정책, 그리고 고용 및 노동시장의 중요성 강조 등임
  - 이러한 특징과 함께 중요한 점은 사회투자정책은 기존 소득보장정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오히려 소득보장제도의 기초 하에 개인 및 가족의 발달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임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 오늘날 사회보호와 경제발전이 상충된다는 논리는 도전받고 있으며, 사회정책은 생산성과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노동시장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반대로, 경제발전은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발전 및 안전 그리고 사회적 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특히 사회정책은 인적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증가 그리고 경제적 참여를 향상시키도록 개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투자 지향적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Lister, 2004; Midgley, 1999; Perkins, Nelms, & Smyth, 2004)

- 모든 사회정책이 사회투자에 부합하지는 않으며, 노인, 환자, 장애인, 아동, 그리고 빈곤가구 아동들에게 일차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 정책결정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소득보조가 필수적이라는 점과 함께 경제참여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발전과 능력향상을 도모하는 사회투자전략을 도입하는 것임

#### □ 인간의 잠재적 능력 개발

- 소득보조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생계를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필수적이지만, 실업자로 하여금 새로운 고용을 준비하거나 노동시장에 재진입 시키는데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았음
- 소득보조의 중요성은 인정하되, 사회투자정책은 건강, 교육, 그리고 자산형성 등을 통한 인적 자본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음 (Lister, 2004)
  - 이렇게 향상된 능력(capabilities)은 실업자들의 재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또한 인적 자본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 예방적 정책

- 사회정책은 치료적 접근에서 예방적 복지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 (Woods, 2007)

- 산업사회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사회문제에 대한 사후적인 대처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후기산업사회에서 복지정책들은 인적 자본과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이는 사전 예방적 대처방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이러한 '예방적(preventive)' 복지정책은 Giddens(1998)에 의해 제시된 '긍정적(positive)' 복지국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 긍정적 복지정책은 수동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록 주도적으로 대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Giddens는 사회투자가 긍정적 복지의 발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긍정적 복지의 증진방안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자산형성을 강조하고 있음

#### □ 고용 중심 정책

- 사회투자정책은 일과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사회정책이 실업자, 청년 실업자, 싱글 부모들, 그리고 장애인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다양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기초로 이해될 수 있음 (Midgley, 1999)
- 일 또는 고용은 빈곤탈출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를 증가시키는 기본 요소이다. 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은 교통지원, 아동보호, 고용상담, 직업훈련, 임금보조, 그리고 고용 장애요인 제거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영국과 미국에서 이러한 고용을 통한 복지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다른 지역의 복지국가들 또한 고용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들이 발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Lister, 2004)

### 3. 사회투자정책과 자산형성지원제도

- 자산형성지원은 사회투자정책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Midgley, 1999; Sherraden, 2016), 두 정책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는지는 다음과 같음

〈표〉 사회투자정책과 자산형성지원정책의 연관성

사회투자정책	자산형성지원정책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저축은 그 자체로 경제적 행위 저축은 경제적 발전에 기여함
인간의 가능성의 개발	인적 자본의 발전에 기여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진취시킴
예방적 정책	위기를 완충하는 역할
고용 중심의 정책	저축이 노동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

- 첫째,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에 기여함
  - 저축은 경제적 행위로, 개인은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을 하며 개인의 저축은 총수요 증가에 긍정적이며, 저축 그리고 미래의 소비는 생산을 자극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초래

할 수 있음

- 저축 및 자산은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 및 가족 발전과 연관되기도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도 함

○ 둘째, 자산은 인간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실현시킴

- 사람들은 미래소비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에의 투자를 위해 저축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저축은 결국에는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투자를 의미함
- Sherraden(1991)에 의해 강조되었듯 자산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셋째, 소득보전은 경제적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소득을 이전한다는 즉, 사후적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산형성 지원제도는 예방과 능력의 향상을 강조함

-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충격을 완충하며(Sherraden, 1991),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저축을 한다는 관점에서 자산은 사회투자정책이 예방적 접근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함

○ 마지막으로, 근로 및 고용은 저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저축액은 실업을 당했을 때에 이용되기도 하고, 저축이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 개인발전계좌의 사용처에서 알 수 있듯이, 저소득층 참여자들은 소규모 사업을 창업하거나, 미래 고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교 학자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직업훈련 등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음

- 이러한 특성은 저축 프로그램이 고용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미국 개인발전계좌 참여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저축액을 늘리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도 있음
- 이는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생산적인 고용이나 자영업을 통해 경제적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함

□ 결론적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사회투자정책과 기본적인 맥락과 특성을 같이하고 있음

○ Sherraden은 자산형성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음

- “자산형성지원제도는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능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것이다 (Sherraden, 1991).”
- 그러나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사회투자제도 하에서 어떻게 실시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회정책 및 제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기대됨

## 제2절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의 이론적 기반 : 제도적 저축이론

- Sherraden(1991)에 의해 저소득층의 저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제시된 후, 저소득층에게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와 경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
- 여기서는 저축 및 자산형성이 저소득층의 빈곤탈피 및 탈 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제시함

### 1. 자산형성의 의미와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필요성

- 자산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3가지 논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회정책의 주요 대상이었던 반면에, '자산'은 상대적으로 정책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왔음(Spillerman, 2000)
- 둘째, 이러한 상대적 무관심은 기존의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지녔던 역진성(regressiveness)을 때문임
  - 즉, 기존의 많은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중산층을 주요 수혜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가진 사람의 부의 확대 재생산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빈곤층이 배제됨으로써 자산불평등 또는 양극화에 일조함 (Sherraden, 1991)
- 셋째, 공공부조제도 하에서 빈곤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 자산조사를 기초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제도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을 소유해야만 수급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가져옴(이태진 외, 2005)

### □ 자산형성의 의미와 효과

○ 자산은 축적된 자원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 자산은 미래의 사회적 위험을 감수할 기반을 제공하고 계획적인 삶을 유지하게 하며, 또한 경제 및 사회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함

- Sherraden(1991)은 다양한 자산효과를 9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안정, 미래지향적 사고 및 행동,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 그리고 아동복지의 향상 등임
- 첫째, 자산은 가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킴 (Dew, 2008a; Krumm & Kelly, 1989; PAGE-Adams & Sherraden, 1996; Raheim & Alter, 1995; Rothwell & Han, 2010; Han & Kim, 2014; Han & Hong, 2011)
  - 가정의 안정성에 대한 자산의 주요 역할은 중병, 실직, 이혼 등과 함께 발생하는 소득 불안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병, 실직 이혼과 같은 사건들은 빈곤선에 가까이 있는 가구에 일어나고 많은 가구들을 소득빈곤에 빠트린다. 여기서 자산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소득불안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Sherraden, 1991). 뿐만 아니라 자산은 가구의 경제적인 압박감을 줄이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로부터 가족을 보

호한다(Rothwell & Han, 2010). 따라서 자산이 존재하면, 충분한 소득을 회복시킬 때까지 가구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적고 사회 경제적인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 둘째, 자산은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함(Bynner & Paxton, 2001; Han, Ssewamala & Wang, 2013; Kohn, et al., 1990; PAGE-Adams & Sherraden, 1996; Shobe & Page-Adams, 2001)
  - 사람들이 현재에 안정되었을 때 그들은 미래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현재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나 미래, 꿈, 기회, 개선에 대한 희망은 중요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현재에 연연하고 일하는데 있어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Sherraden, 1991; Boyle, 2002; Green & White, 1997; Zhan & Sherraden, 2003).
  - ID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참가자가 사회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참가자와 자손 모두에게 가능성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참가자들이 미래에 대한 통제 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준다. 게다가 ID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저축을 증가시킬 것이며, 저축과 관련된 이득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 구조를 통해 자산 축적을 증가시킬 것이며(Lombe, Nebbitt & Buerlein, 2007),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와줌
- 셋째, 자산은 인적 자본과 다른 유형의 자산의 발달을 촉진시킴 (Johnson & Sherraden, 2007; Pandey, 2003; Yadama & Sherraden, 1996)

-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교육적인 과정이다. 사람들은 투자하고, 관리하고,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정보를 구하는데 집중을 하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재정적인 지식을 얻고 교양을 얻는다. 이러한 경험과 함께 사람들은 추가적인 재정적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이익과, 노력과 성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가적인 노력은 평균적으로 더 많은 소득과 자산 축적을 야기한다(Sherraden, 1991)
- 넷째, 자산은 기술의 집중 및 전문화를 가능하게 함
  - 가난한 사람들은 단기 소득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의 가구를 먹여 살려야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교육과 훈련을 포기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전문화는 일의 분배와 비교우위를 야기하지만 자산빈곤 가정은 비교우위를 만들 기회조차 없다 (Sherraden, 1991).
  - 가정의 자본 축적과 집중 및 전문화의 역동성은 생산과 비슷하다. 가정의 자산 축적은 집중과 전문화를 가능하게 한다. 가난한 가정에서 사람들은 더 좋은 집중과 전문화를 할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소비한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도구를 사고 전문화를 위한 기술을 배우는데 자산이 소득에 앞서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산 없이는,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지불하기 위한 자원이 없다 (Sherraden, 1991).
- 다섯째, 자산은 위험을 각오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Sherraden, 1991; Zhan, 2006)

- 자산 투자에서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를 통하여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을 어느 정도 분산함으로써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안승철, 2002). 이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반한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합리적인 위험기피 투자자들에 의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을 다룬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게 된다면, 사람은 그 소유자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분산투자할 것이다. 적은 자산을 가진 가구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줄 거래비용이 너무 높아 불가능하다. 분산투자가 효과적으로 가능할 때 수익도 높다. 즉, 분산투자를 하면 위험을 감안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여섯째, 자산은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킴 (Scanlon & Page-Adams, 2001; Yadama & Sherraden, 1996)
  - 복지정책에서 자산의 통제와 역량강화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는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은퇴에 있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일곱째, 자산은 사회적 영향력을 높임(Duran, 2002; Pandey, 2003; Rohe & Stegman, 1994)
  - 자산은 경제적 복지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효과도 야기한다. 즉, 자산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열등한 지위와 우등한 지위 간 차이를 만든다. 자산의 사회적 기능을 매우 명확하게 요약하면, 자산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열등한 지위와 우등한 지위간의 차이를 만든다. 자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가 그렇게 그들을 예측하듯

이 열등한 지위에 있다. 자산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가 그렇게 그들을 예측하듯이 우등한 지위에 있다 (Sherraden, 1991).

- 여덟째, 자산은 정치적 참여를 증가시킴(Han & Hong, 2013; McBride, Lombe & Beverly, 2003; Pandey, 2003; Paxton, 2001; Sherraden, 2014)
  -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 과정에 참여할 더 많은 동기부여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부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야기하고 결국 더 많은 정치적 참여를 야기한다(Sherraden, 1991).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지방선거에서 더 높은 투표율을 나타낸다는(곽현근, 2007)하는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아홉째, 자산은 후세대의 복지를 향상시킴(Han, Rothwell & Lin, 2012; Mayoux, 2001; Zhan, 2006; Zhan & Sherraden, 2003)
  - 미래 방향설정과 관련하여 자산은 또한 후세대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자산은 소득과 소비가 제공되지 않는 세대 간을 연결한다. 부모에게, 더 중요한 복지 효과가 부모 자신의 복지보다 세대 간 연결일 것이다. 자산의 누적적인 현상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중요한 세대 간의 복지효과이다 (Sherraden, 1991). 자산을 가진 부모는 기대에 부합하고자, 자식의 교육적인 성취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며, 이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Reynolds & Lee, 1991; Reynolds & Walberg, 1992). 더불어 선행연구는 집을 소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월세나 전

세로 거주하는 가정의 아이들보다 고등학교 졸업율이 높음을 뒷받침하였다(Aaronson, 2000; Kane, 1994).

- 이러한 자산효과를 감안하여 Sherraden(1991:6)은 자산형성 및 소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함축적으로 정리하고 있음

“소득은 굶주린 배를 채우지만, 자산은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한다.”  
(While income feeds people's stomachs, assets change their heads)  
(Sherraden, 1991)

-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자산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자산효과(wealth effect)에 기초하고 있음
  - 저소득층에게 저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된다면, 저소득층에게도 이러한 자산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Sherraden(1991)은 자산 불평등, 역진적인 기존 자산형성지원제도,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적 미비 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포용적(inclusive) 자산형성지원제도를 제안하였음
    -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는 보편성(universal), 누진성(progressive), 적절성(adequate), 그리고 생애주기적(lifelong) 특성을 지님 (한창근, 2006; Sherraden & 한창근, 2007; Han, 2010; Sherraden, 2016)
    - 특히, 자산 불평등을 고려할 때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기회를 증가시키고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

도록 설계되고 있음

- 저소득층이 주거, 교육,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저축하도록 지원해주고, 이렇게 마련된 목돈을 통해 빈곤탈피 또는 탈 수급의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자활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취지임

□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적절하게 제도적인 기회가 주어지면 저소득층도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

○ 저소득층의 저축을 설명하기 위해 Sherraden(1991)은 제도적 저축이론(Institutional Saving Theory)을 제시하였음

- 개인적 선호와 합리성을 강조하는 신고전학파의 저축이론과 저축의지(willingness to save)를 강조하는 경제심리학 저축이론과는 달리, 제도적 저축이론은 금융기관 및 사회정책 등의 제도가 개인에게 어떠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또는 그 기회가 얼마나 개인에게 접근 가능한지 등의 제도적인 요소를 저축의 결정요인으로 보고 있음(Beverly & Sherraden, 1999)

○ 제도적 저축이론의 정책적 함의는 저소득층에게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임

- 제도적 저축이론을 이용한 저축행위의 경험적 연구들은 제도적 요인이 저소득층의 저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Schreiner, Clancy, & Sherraden, 2002; Han & Sherraden, 2009)

## 2. 자산형성이 저소득층의 탈 빈곤 또는 탈 수급에 미치는 영향

- 자산빈곤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위기대처에 있어 불안정한 기초를 제공함(Han, 2009)
- 자산빈곤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은 탈 빈곤 또는 탈 수급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는 것임
  - Sherraden(1991)이 처음으로 제도적 저축이론을 제시한 이 유도 탈 빈곤을 경험한 가구들과 그렇지 않은 가구들의 비교분석에서 비록 적은 규모일지라도 자산의 소유여부가 탈 빈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저축 및 자산형성이 어떻게 탈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저축을 통한 자산의 증가는 그 자체로 빈곤 탈출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빈곤층의 수급자격을 심사하는 자산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미국의 개인발달계좌에 관한 연구에서, 프로그램 참여기간 4년 동안 가구당 총 자산이 평균 약 \$30,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Han, Grinstein-Weiss, & Sherraden, 2009),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이 저소득층 탈 빈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둘째,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참여 결과물로서 탈 빈곤을 설명하고 있으나, 저축 또는 자산형성의 '과정'과 탈 빈곤을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음

- 저축은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희생을 동반하게 되는데, 우선, 주어진 소득 내에서 소비패턴 및 지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저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추가적인 소득원을 알아볼 수 있음
- 미국 개인발달계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저축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으며, 약 27%의 참여자들이 개인발달계좌에 저축하기 위해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Sherraden & McBride, 2010)
- 이러한 결과는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생산적인 고용이나 자영업을 통한 경제적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소득의 증가가 탈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직접적 연구는 아직 없지만, 개인발달계좌 참여 후 근로소득의 증가는 탈 빈곤과 관련되어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함

○ 셋째, 자산과 인적자본에의 투자와의 긍정적 관계는 탈 빈곤과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자산은 개인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인적 자본에의 투자를 위해 저축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저축하며, 이러한 저축은 결국 가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투자를 의미함
- 대부분의 개인발달계좌의 목적에서 나타나듯이, 저소득층 참여자들은 소규모 사업을 창업하거나, 미래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직업훈련을 위해 저축함

- 이러한 특성은 자산형성프로그램이 인적자본 향상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Sherraden (1991)에 의해 강조되었듯이 자산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향상된 인적자본은 탈 빈곤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넷째, 저축 및 자산의 예방적 효과도 탈 빈곤과 관련되어 주목받을 만한 긍정적인 부분임
  -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인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며 (Sherraden, 1991),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예를 들어, 실업, 건강문제, 퇴직 등)가 발생했을 때 자산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는 경제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대응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일 것임(Han & Rothwell, 2010)
  - 특히 경제적 대응에 있어서, 보유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산은 위기 직후 빈곤선 이하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자산이 빈곤의 예방적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이 가지고 있는 세대 간 탈 빈곤 효과, 즉,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부모의 자산이 아동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아동 교육의 발달 및 대학 진학에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Williams Shanks 외, 2010; Chowa 외, 2010)
  - 이러한 연구는 자산을 가진 부모가 아동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긍정적 효과를 나타냄을 가지고 있음을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아동의 인적자원 증가 그리고 교육성취도 향상은 노동시장에서 보다 좋은 일자리를 가질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빈곤층을 대상으로 개인발달계좌가 도입된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발달계좌의 등장 및 확대는 이러한 세대 간 빈곤의 대물림 방지에 정책결정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마지막으로, 자산과 탈 빈곤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저축 및 자산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자산효과(wealth effect)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과정이라기보다 무엇을 위해 저축을 하고(목표 설정), 어떻게 쓸 것인가(투자 설계)에 관한 종합적인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구체적 행동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과정을 미래에 대한 '희망(hope)'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들이 '희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자산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임
- 빈곤층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위험요인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물질적 빈곤이 아니라 빈곤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무기력에 빠지는 정신적인 빈곤일 수 있음
- 그러므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주

어진 저축의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정신적인 빈곤과 물질적인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것임



제 3 장

외국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사례 및 최근 동향



# 3

## 외국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 운영사례 및 최근 동향

- 이 장에서는 외국의 자산형성사업 운영사례(정책대상, 지원방식, 지원수준, 전달체계 등)를 검토하고, 최근의 변화 동향을 제시함
  
-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확산 경향
  - Sherraden(1991)이 제도적 저축이론과 개인발달계좌(IDA)를 제시한 후, 많은 국가에서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한창근, 2006)
    - 첫째,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 유형 자산형성지원제도
      -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잔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미국 IDA 프로그램을 비롯한 영국의 Saving Gateway, 캐나다의 Learn\$ave 등이 대표적 사례임
  
    - 둘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유형 자산형성지원제도
      - 국가별 운영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든 아동들을 대

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과 평가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음

- 미국의 Saving for Education, Entrepreneurship, and Downpayment(SEED), 영국의 Child Trust Fund, 싱가포르 Child Development Accounts 등이 대표적 사례임
- 이 장에서는 외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사례 중에 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주요 특성과 평가연구 결과, 최근 변화 동향에 대해 살펴봄

## 1. 미국

### 가. 개인발달계좌 (IDAs: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가 Sherraden에 의해 제시된 후,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가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됨
- (개요) 저소득층, 특히 근로빈곤층의 저축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산형성 기회 제공
- (자격) 연방정부 빈곤선(200%), 지역의 중위소득 기준(65%~85%), TANF 수급자 또는 EITC 수급자 등 각 주별로 상이함
- (재원) 주 정부 예산, Tax Credit, TANF 예산, 민간재원 활용 등
- (적립) 매칭비율은 1:1 또는 1:2이며,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간 적립 가능
- (용도) 주택구입, 직업훈련, 교육, 창업, 은퇴자금 등으로 한정

○ (운영) DHHS 기금 지원, 주정부 운영

□ 미국 개인발달계좌(IDA)의 세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저소득층 특히 근로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IDA 프로그램별 참여 자격조건으로 다른 소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빈곤선 200% 이하 근로빈곤층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임
- 본래 IDA 제도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수정되었음

○ 둘째, 저축용도는 주로 주택구입, 대학학자금, 소규모 창업 등임

- 저축용도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저축용도의 변경을 허용하는 프로그램도 있음

○ 셋째, 저소득층의 저축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매칭(matching) 펀드를 도입하고 있음

- 가장 일반적 매칭율은 1:1 또는 1:2나 높게는 1:7 또는 1:9의 매칭율을 적용하는 IDA 프로그램도 있음
- 매칭율은 각 IDA 프로그램의 자원동원 수준, 저축의 용도, 또는 저축 목표액에 따라 여러 가지 매칭율이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구체적으로 매칭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저축 용도나 저축 목표액과 상관없이 일관된 매칭율을 적용하는 프로그램도 있음

- 넷째, 예산은 IDA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
  -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높은 매칭 펀드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음
  - 프로그램별 예산구성은 다양하지만, 예산이 공공과 민간 기금에 의해 마련된다는 점이 IDA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임
- 다섯째, IDA 프로그램에서 저축에 관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IDA 프로그램의 참여와 함께 계좌를 개설한 저소득층은 의무적으로 최소 기준 시간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됨
  - 이러한 최소 교육시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IDA 프로그램에서 강제 탈퇴 당하기도 함

#### 나. 아동발달계좌(CDA) (SEED: Saving for Education, Entrepreneurship, and Downpayment)

- Sherraden 교수에 의해 제시된 포용적 자산형성제도는 저소득층에게만 적용되는 잔여적 형태가 아니라 처음에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제도로 논의되었음
- 출생과 함께 하나의 계좌가 아동에게 주어지고 생애주기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들이 저축을 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성년기 이후에는 본인이 저축을 하고 노후에 저축된 자산으로 생활을 한다는 구상으로 시작되었음
  - 그러나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

되기 보다는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IDA 프로그램이 우선 실시됨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Children's Savings Accounts(CSA)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음
  - CSA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The America Saving for Personal Investment, Retirement, and Education(ASPIRE) 법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Saving for Education, Entrepreneurship, and Downpayment(SEED)라는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음
    - SEED는 보편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 및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함
- CSA의 실천모델을 만들고 그 효과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SEED 시범사업은 다양하게 이루어짐
  - SEED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약 절반 정도가 빈곤선 이하의 빈곤층 가구들이 참여하였음
    - 참가자의 상당수가 저소득, 생활비 부족, 많은 자녀수, 부채, 그리고 금융정보나 지식 부족 등으로 저축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Sherraden & Stevens, 2010)
  - 한편, SEED 프로그램은 다른 연령의 아동을 참가자로 설정하여 연령에 따른 아동발달계좌의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였음
    - 어떤 지역에서는 취학 전 (pre-school) 아동들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Head Start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과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른 지역에서는 실험조사설계 방식으로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예금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됨(Sherraden & Stevens,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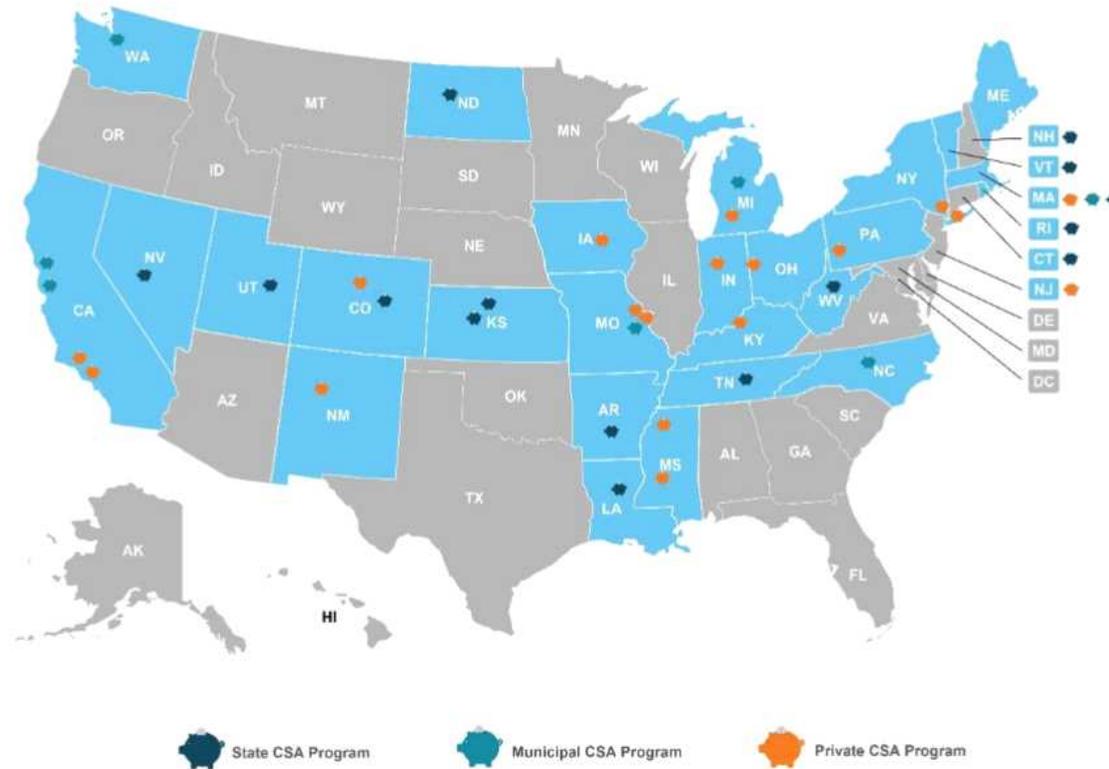
□ CSA는 핵심적인 특징은 아래 그림과 같이 4가지 요소로 제시할 수 있으며, SEED 시범사업 이후 연령별 차이와 더불어 프로그램별로 제도적 특성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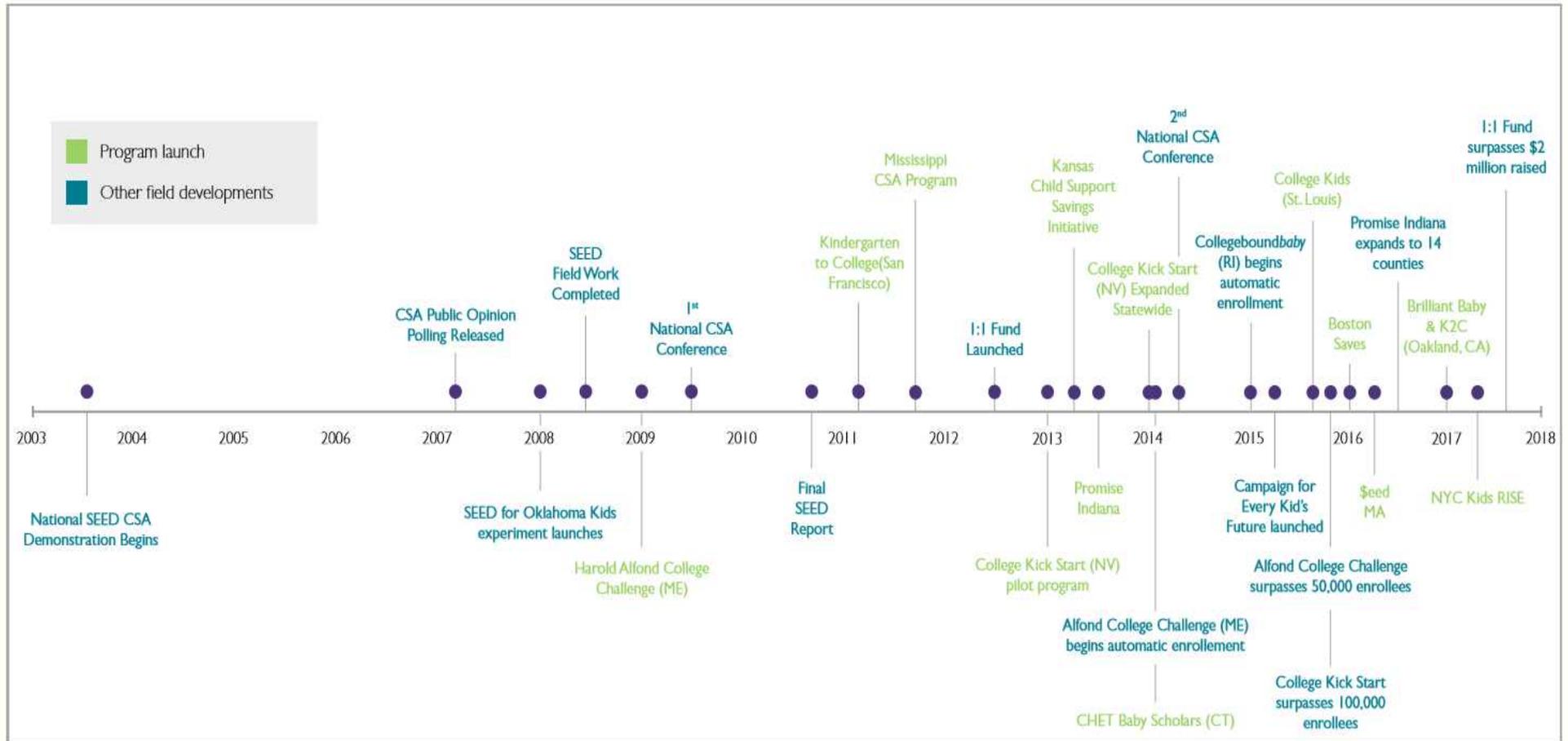
- 최초 계좌 개설 및 등록시점과 방식, 초기 적립금 지원 수준, 초기 적립금 요구여부 및 수준, 매칭 최고액 등을 지역 프로그램마다 달리 설정하였고, 총 매칭금을 포함한 인센티브 총액 역시 프로그램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음

□ CSA 발전과정 및 운영 현황

- CSA는 SEED 시범사업 이후 각 주정부 또는 카운티(County)별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음
- 2017년 5월 기준으로, 미국 전역의 32개 주정부에서 운영 중인 49가지 프로그램에 약 313,000명의 아동이 CSA에 참여하고 있음



□ 미국 CSA 주요 발전과정



## 2. 영국

### 가. 아동신탁기금 CTF (Child Trust Fund)

□ 아동신탁기금은 아동을 위한 저축통장제도를 의미함

- 처음 노동당의 2001년 선거 전략으로 등장하였고, 2005년 1월 실시되었음
- 모든 영국 아동들로 하여금 저축습관을 장려하고 저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음
  - 부모가 아동을 위한 아동신탁기금을 열지만, 기금은 아동명의로 통장이 되고 아동이 소유의 자산이 됨
  - 통장의 개설과 함께, 정부는 초기 그랜트 형식으로 250파운드를 지급하며, 아동이 7세가 되는 해에 추가50파운드를 지급함
  - 정부의 그랜트 외에 아동의 부모 및 친인척들은 추가적으로 아동의 통장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저축액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제공하고 있음
- 자격조건
  - 2002년 9월 1일과 2011년 1월 2일 사이에 출생한 영국 거주 아동
  - 아동신탁기금 폐지로 2011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은 CTF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아동신탁기금에는 3가지 통장이 있음
  - Stakeholder accounts: 두 개 이상의 회사에 투자하는 통장. 아동이 13세가 되는 해 저위험투자 회사로 저축액을 옮기게 됨
  - Share accounts: 주식투자용 통장
  - Savings accounts: 일반적인 저축 통장. 이자를 지급받음

- 아동신탁기금은 참여 아동들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게 되어 있음
  - 금융교육은 아동들로 하여금 미래 자산투자를 실현시키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에는 저축액을 인출할 수 없음
  - 사망진단을 받을 정도의 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정도가 심할 경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음
  
- 기존 개인발달계좌 또는 아동발달계좌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아동신탁기금은 저축용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대부분의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저축액의 사용처로 사회발달 또는 사회투자를 의미하는 주거, 창업, 교육 등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으나, 아동신탁기금의 경우 그 저축용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위에서 설명한 금융교육의 실시에 따라 아동들이 긍정적인 사회발달과 연관되는 용도로 저축액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음
    - 그러나, 저축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동신탁기금 반대론자들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음

#### 나. Junior ISA (Junior Individual Savings Accounts)

- 아동신탁기금 중지에 따라 그 대체 제도로 Junior ISA가 도입되었음
  - Junior ISA 통장은 CTF와 주요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음

□ 참여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영국에 거주하고 있고, 아동신탁기금 참여자 격이 없는 아동
- 16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나 보호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16세 또는 17세 아동은 스스로 가능

□ Junior ISA에는 2가지 유형이 있음

- 현금 Junior ISA: 통장 저축액에 세금이 없는 통장
- 주식 투자 Junior ISA: 주식 투자 후 발생한 수익이나 배당에 세금이 없는 통장
- 연간 최고 저축액은 3,600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최고 저축액을 두 개의 통장에 나누어서 저축할 수 있음

**다. SG (Saving Gateway)**

□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저축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2002년에 5개 지역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Saving Gateway(SG1)를 도입함

- 대상: 16세부터 연금수급대상 연령 (초기 프로그램으로 약 1,500명이 참여)
- 저축기간: 18개월
- 매칭: 월 25파운드 총 375파운드(15개월 동안 25파운드 저축액에 대한 매칭)
- 저축용도의 제한은 없으며, 금융교육 제공

- 2004년에 두 번째 Saving Gateway(SG2)를 실시함
  - 영국 6개 지역에서 실시
  - 대상: 16세부터 65세까지의 저소득층 참여대상의 확대 (개인소득 연 25,000파운드 까지, 가구소득 연 50,000파운드 까지)
  - 저축액: 이전 SG1에서는 월 저축액을 25파운드로 정했지만, SG2에서는 월 저축액을 25파운드에서 125파운드까지 확대
  - 매칭: 이전 SG1과는 달리, 지역별 프로그램별 매칭율을 달리 책정 (1:0.2 ~ 1:1 매칭까지)
  - 저축용도의 제한은 없으며, 금융교육의 제공

#### **라. Help to Save (2018년 4월 도입 예정)**

- 2016년 3월 보수당 정부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발표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 노동당이 시행한 SG와 CTF 폐지 이후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서 도입을 추진함
  - (지원대상) ① Working Tax Credit를 받는 자 또는 ② Universal Credit를 받는 근로빈곤층으로 주당 가구소득이 국가 생활임금의 16시간 만큼에 해당하는 약 350만명을 대상으로 함
  - (지원조건) 1인 1계좌, 본인이 최대 월 50파운드까지 적립하면 정부가 월 저축액의 50%를 지원함
    - 월 납입 횟수 제한 없으며, 1회당 최소 1파운드 이상 매월 최대 50파운드를 적립할 수 있으며 1:0.5의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2년 동안 최대 1,800파운드를 적립할 수 있음(1,200파운드 + 600파운드 정부지원)

- (적립기간) 2년 간 정부지원금 지급하며, 2년 연장 하여 추가 2년 더 가입 가능
  - 월 최대 50파운드씩 4년(2+2년) 동안 저축 시 최대 3,600파운드 적립 가능(본인 2,400 + 정부 1,200)
- (해지요건) 가입자가 원하는 때,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 일부 인출 후 해지, 사용용도 제한 없음
- (운영) HM Treasury 주관 & 산하기관인 NS&I(National Saving & Investment) 운영

### 3. 캐나다

#### 가. Learn\$ave 프로그램

- 미국의 개인발달계좌에 영향을 받아 캐나다에서 Learn\$ave를 2000년에 실시하였음
  - Learn\$ave는 인적자원 및 기술개발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HRSDC)에 의해 저소득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도입되었음
  - 캐나다 7개 지역 10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
  - 저축 용도로는 교육 및 직업훈련 그리고 창업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 저축 용도에 따라 참여자들은 두 개의 stream으로 구분됨
      - Education/training stream & Micro enterprise stream.
      - 각 프로그램 별 Micro enterprise stream은 총 참여자의 20%까지 참여할 수 있음
    - Education/training stream의 참여자들은 교육 및 직업훈련 용

도로 저축액을 사용할 수 있지만, Micro enterprise stream의 참여자들은 창업을 비롯 교육 및 직업훈련에 저축액을 사용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참여자격 조건

- 지역별 빈곤선(The Low-Income Cut-Off: LICO) 120% 이하의 연 소득
- 금융자산: 연소득의 10% 미만의 금융자산 또는 \$3,000 미만의 금융 자산
- 지역별 주택 가치의 중위값 미만 가치의 주택 소유
- 연령: 20세부터 65세까지의 근로연령
- 교육: Full time 학생은 참여를 할 수 없음
- 한 가구당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음

□ 저축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매칭으로 1:3의 매칭비율 적용

- 매칭캡: 월 \$250 그리고 3년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1,500
  - 매칭을 받기 위해 통장 만료 전 12개월간 적어도 매월 \$10를 저축 하도록 하여 정기적인 저축을 강조함

□ 저축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48개월 이내에 정해진 저축용도로 저축액을 인출하여야 함

- 저축액을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trust)의 형식으로 보관되며 저축용도가 정해진 후 그 신탁금을 저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짐

□ 금융교육

- 15시간의 금융교육을 실시함. 금융교육 내용으로는 예산관리, 소비 습관, 크레딧의 사용, 현실적인 목표 설정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사례관리

- 저축목적, 저축과 관련된 저해요인의 파악, 욕구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referral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사례관리자는 분기별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만나 사례관리를 제공하도록 함

**나. 캐나다 등록장애인저축플랜 (Registered Disability Saving Plan: RDSP)**

- 캐나다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장기 저축프로그램을 2009년에 실시함

□ 자격조건

- 연령 60세 미만의 장애인
- 장애세금공제(Disability Tax Credit) 수혜자로 장기 저축 계획을 가진 자

□ 주요 특성

- 연간 저축액에 제한은 없지만, 1인당 일생동안 총 저축액은 20만 달러로 한정되어 있음
- 가구 소득 및 저축액에 따라 연간 총 3,500달러까지 매칭을 제공함
- 일생동안 받을 수 있는 최고 매칭금액은 70,000달러임

- Canada Disability Savings Bond를 통해 저소득 및 중산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1,000달러까지 추가 매칭을 제공하며, 일생동안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20,000달러임
- 이러한 국가의 매칭 및 추가입금은 저축프로그램 참가자의 연령이 49세일 때까지 제공함
- 보호자 사망 시 연금 및 펀드에 저축된 금액은 아동의 RDSP 통장으로 이전될 수 있음
- 저축액 및 이자소득은 면세이며, 매칭 및 추가지원은 적어도 10년간 통장에 저축되어야 함

#### 4.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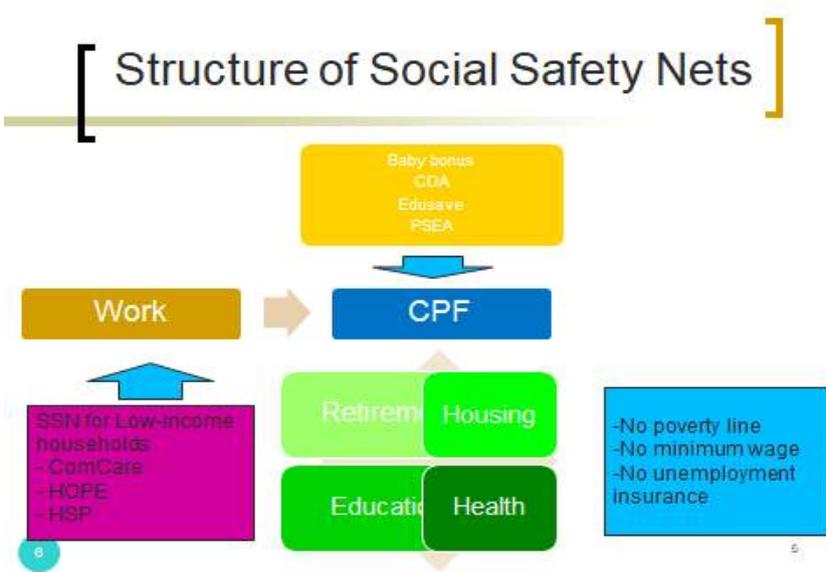
##### □ 싱가포르 사회복지정책의 구조

- 일차적으로 근로를 통한 자활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함
- 싱가포르의 사회정책은 자산형성지원제도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 개인 강제저축프로그램인 Central Provident Fund(CPF)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 식민지 시절 도입된 CPF는 근로자로 하여금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저축을 하게 함
  - 자산형성에 초점을 둔 사회정책은 아동 청소년기에도 도입되어 실시되며, CPF로 연계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Child Development Accounts(CDA), Edusave, 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PSEA)
- 근로를 통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강제저축 프로그램인 CPF(Central Provident Fund)에 저축을 하게 되고 이 저축액을 주택구입, 교육,

의료, 그리고 은퇴 후 소득에 사용할 수 있음

- 특히 CPF 저축액을 공공주택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어 싱가포르 시민들의 자가보유율이 90%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아동발달계좌(CDA)와 대학교육저축프로그램(PSEA)이 연계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CPF로 연계됨



□ CPF (Central Provident Fund) 제도

- CPF는 1955년 7월 1일 처음으로 시작되어, 은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동안 노동소득의 일정 부분을 강제적으로 각출함으로써 저축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운영 철학: 개인의 자조(Self-Reliance)에 있음
- 제도의 장점
  -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짐
  - 자신의 것으로 소유권이 증진되며, 평생소득으로서의 기능을 함
- CPF의 보장 영역
  - 은퇴(Retirement)
  - 주택(Housing)
  - 건강(Healthcare)

□ CPF의 보장 영역별 특징

범주	유형	내용
Retirement	CPF LIFE	·CPF LIFE는 은퇴하기 이전의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받은 소득의 일부를 매달 각출하게 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함 ·CPF LIFE의 혜택을 받는 연령은 현재 65세로 규정함
	Retirement Sum Scheme	·Retirement Sum Scheme는 CPF LIFE에 가입한 사람이 65세에 이르면 약 20년 동안 이들에게 매달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줌 ·기본적으로 55세가 되면 저축계좌에 금액이 \$40,000 이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인 65세가 되면 \$60,000을 받을 수 있음 ·저축계좌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CPF Withdrawals At 55 years old	·55세부터 CPF LIFE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들의 CPF 저축계좌에서 저축액을 인출할 수 있음
Housing	Public Housing Scheme	·CPF의 일반저축계좌에 가입한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재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Private Properties	·CPF의 일반저축계좌에 가입한 사람들이 자신의 점유지에 주택을 짓거나 투자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범주	유형	내용
	Scheme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된 금액의 일부 혹은 전액을 CPF를 통한 저축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
	Home Protection Scheme	·갑작스러운 사건(가족구성원의 죽음 혹은 가족구성원의 영구적인 장애)으로 집을 잃을 경우 집을 보호해 주는 제도
Healthcare	MediSave	·CPF에 가입한 사람들이 소득의 일부를 MediSave 계좌에 저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인 위협이나 갑작스러운 가족의 응급상황 혹은 간단한 외과적 수술, 외래비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함
	MediShield	·MediShield는 기본적인 의료보장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의 의료급여와 외래환자의 높은 치료비용(투석이나 암과 같은 화학요법을 요구하는 것)에 사용되어질 수 있음 ·MediShield가 취급하는 병원들은 대형병원들로서 B2급 혹은 C급 병동을 말함
	MediShield Life	·MediShield Life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MediShield를 대체하고 새롭게 등장한 저축계좌로 2015년 말 개설
	Private Medical Insurance Scheme	·CPR의 MediSave 계좌에 가입한 사람들이 IPS(Integrated Shield Plans)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사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ElderShield	·ElderShield는 일종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과 아주 단순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본적인 금전적 보장을 해주는 것을 말함

□ CPF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확보방안

○ 기본적으로 CPF를 통해서 구입한 주택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마련을 제도적으로 확충하고 있음

- 일차적으로 주택의 다운사이징을 활성화하고 있음: 싱가포르 공공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방이 3-5개의 큰 규모임. 따라서 노후에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큰 주택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이런 경우 정부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매입하고 소규모의 주택으로의 이전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싱가포르에서는 독거노인의 경우 Studio 아파트 건립을 확장하고 있으며 주택의 downsizing을 지원해주고 있음.

○ CPF 제도에서는 은퇴연령 이후 CPF 연금 개시시점에 최소 15만달러 정도의 예치금을 두지 않으면 연금개시가 안되도록 하는 Minimum Sum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매년 CPF 관리위원회에서 그해 Minimum Sum 수준을 향상하여 공표하고 있음.

□ 교육을 위한 저축계좌

○ 교육을 위한 저축계좌에는 3가지 유형이 있음

- CDA(Child Development Account) : 아동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동의 건강과 초기교육의 성취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저축계좌
- Edusave : 아동이 학교에 입학 할 때 아동의 학업성취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저축계좌
- PSEA(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 : 아동이 더 높은 교육을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축계좌

○ CDA(Child Development Accounts)

- 싱가포르의 아동발달계좌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
- 2001년부터 새로 태어난 아동에게는 싱가포르 4,000달러(첫째와 둘째 아이) 또는 6,000달러(셋째와 넷째 아이)를 베이비 보너스로 지급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아동발달계좌가 도입되었는데, 0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저축액에 1:1의 매칭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음
- 최대 매칭액은 첫째와 둘째 아동에게 싱가포르 6,000달러, 셋째와 넷째 아동에게는 싱가포르 1만 2,000달러, 그리고 그 이후의 아동에게는 싱가포르 1만 8,000달러로 설정되어 있음
- 아동발달계좌 저축액은 아동보육, 의료비, 그리고 조기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쓰고 남은 저축액은 아동이 6세에 이르면 PSEA에 이전됨

○ Edusave

- Edusave는 6세에서 16세까지의 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1993년에 실시됨
- 이 통장의 주요 사용처는 운동, 교재비, 학습여행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사실 Edusave는 개인저축프로그램 이라기 보다는 학생 이름의 통장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형태임
- 보조금은 싱가포르 달러 160-200 정도를 지원하며, 정부 보조금은 싱가포르 50억 달러 기금의 이자를 이용하여 운용됨
- Edusave에서 쓰고 남은 돈은 PSEA로 이전됨

○ PSEA(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

- PSEA는 학생을 둔 가족들이 대학 등록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축제도로,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7세부터 20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7세부터 12세 아동의 경우, 싱가포르 100~200달러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연령 아동의 경우는 싱가포르 200~400달러를 지원함
- 아동을 둔 부모들도 PSEA에 저축을 할 수 있으며 그 저축액에 1:1 매칭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음
- CDA와 PSEA 매칭액은 연계되며, 첫째와 둘째 아동의 경우 최고 싱가포르 6,000달러까지, 셋째와 넷째 아동은 싱가포르 12,000달러까지 매칭함
- PSEA 저축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령이 30세에 도달하면 CPF로 이전됨

## □ 교육을 위한 각 저축계좌의 특징

저축계좌	CDA(2001)	Edusave(1993)			PSEA(2008)
연령	0~6세	7~13세			7~20세
매칭율	1:1	없음			1:1
매칭금액	아동 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여 저출산 대책으로서 목적이 있음 1~2명 : \$6,000 3~4명 : \$12,000 5~6명 : \$18,000	매년 사용되는 금액	2015년 추가 자금액	전체 금액	아동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름 1~2명 : \$6,000 3~4명 : \$12,000 5~6명 : \$18,000
		최 \$200	\$150	\$350	
		중 \$240	\$150	\$390	
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초기 아동 교육을 위해 만들어짐	Edusave는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교육적 기회를 성취할 수 있게 함  교육적 기회의 성취란 아동의 전체적인 발달과 학문적인 분야와 비학문적인 분야 모두에서 전인격적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함			아이의 중등교육 이후 고등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교육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

## □ HOPE (Home Ownership Plus Education)

○ HOPE는 2004년 1월에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젊으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 저축계좌(CPF, CDA, PSEA)에 추가 인센티브와 지원금 제공

## ○ 수혜자격 기준

- 가구의 소득이 매달 \$1,700이거나 혹은 그보다 낮아야 함

-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매달 \$1,200을 넘어서면 안 됨
- 아내의 나이가 35세이거나 혹은 그 보다 낮아야 함
- 결혼한 부부로서 자녀가 1명 혹은 2명이여야 되며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남편 또는 아내가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 역시 싱가포르 시민이거나 싱가포르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남편은 고용되어 있어야 함

○ HOPE의 보장 영역: Home(주택) & Education(교육)

□ 싱가포르의 자산형성지원제도 평가

- 싱가포르의 CPF와 저축프로그램의 실시는 미국 개인발달계좌의 출발에 영향을 미침
- 싱가포르 사회정책의 중심축이 저축프로그램들(CPF, 주택정책, 아동 발달계좌, 대학학자금저축제도 등)이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저축프로그램 중심의 사회정책은 개인 참여 또는 기여가 있어야만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개인책임 강조)에 기초를 두고 있음
- 싱가포르의 자산형성지원정책은 출생 시 아동발달계좌(CDA)부터 노후(CPF와 주택정책)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출생부터 노후까지 관여하는 자산형성지원정책을 가능하게 만든 제도적 특성은 저축프로그램의 연계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다는 것임(CDA - PSEA - CPF)
- 싱가포르 자산형성지원정책의 또 다른 주요 특성은 보편성임
  - 모든 시민들이 저축계좌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제도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싱가포르 자산형성지원정책의 문제점은 역진성이 높다는 점임
  - 저축 프로그램에 가입은 하되, 실제 저축하는 금액이나 빈도는 중상층의 경우 저축여유가 높고 이에 따라 제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저축 가능성이 낮고 이에 따라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각 자산형성지원제도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연구가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제 4 장

우리나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한계



# 4

## 우리나라의 자산형성 << 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한계

### 1. 자산형성 도입 및 추진 경과

- 우리나라에서도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계좌),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시행 이후, 최근 일부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서울, 경기 등)에서 청년 등 특정 정책집단을 대상으로 유사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도입이 검토된 바 있으나, 2007년 시설보호아동을 중심으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제한적으로 처음 시행됨.
- 2010년에 이르러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3년 이후 탈 수급을 조건으로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처음으로 희망키움이 도입됨
  - 근로유인형 정책 연계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2013년 내일키움통장(자활사업참여자), 2014년 희망키움통장 II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됨.
  - 최근,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도입 (2018년) 발표
- 국내 주요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사례 및 확대 추진 현황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아동발달지원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I ☞ 생계, 의료급여 수급대상 근로빈곤층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II ☞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근로빈곤층

- 보건복지부 내일키움통장 ☞ 자활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와 연계하여 자산형성지원, 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 대상
- 서울특별시 희망플러스 통장 ☞ 희망키움통장과 유사
- 서울특별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 일하는 청년의 자립지원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 시범사업 후 최근 시행

## 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 개요

### □ 중앙정부 주요 자산형성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희망키움통장 I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근로빈곤층) 희망키움통장 II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저소득 근로빈곤층) 내일키움통장 (자활사업참여자) ※ '드림셋' 시범운영(2015) ☞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자산형성(내일키움통장), 채무상환 3가지 연계 지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자체와 협약하여 운영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 탈북 새터민 자산형성지원
여가부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구별 5~20만원 1:1 매칭, 2015년 이후 사업 중단)

※ 최근(11.8) 경제부총리가 경제분야 예산안 관련 질의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병 급여 인상(약 20만원 ☞ 약 40만원)과 관련하여 사병 전역 시 자산축적 방안 검토를 언급한 바 있음

##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자산형성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서울 희망플러스 ☞ 희망키움통장 유사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2017) ☞ 최초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꿈나래통장(아동발달계좌, ~14세) ☞ 3년/5년, 5/7/10/12만원, 1:1 매칭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추진 검토 중
부산광역시	청년 희망날개통장 (2017.7) ☞ 18~34세, 중위 80%(월소득 200만원 이하), 3년, 10만원, 1:1 매칭
대전광역시	행복나눔 청년희망통장 (2017.10) ☞ 18~34세, 중위 100%(월소득 200만원 이하), 3년, 15만원, 1:1 매칭
광주광역시	청소년 한부모 더불어행복통장 (2016) ☞ 여가부 사업 중단 후 자체 실시 5만원, 1:3 매칭(시 2, 민간 1)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발달장애인복지 TF 설치 및 계획 포함되었으나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후 참고하여 진행 예정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7) ☞ 최근 언론 홍보로 이슈 확산 (사례 참조)
전라남도	청년 희망디딤돌통장 (2017.10)☞ ☞ 18~39세, 중위 80%(월소득 200만원 이하), 3년, 10만원, 1:1 매칭
경상남도	청년 유니온 등이 도 의회 및 지방언론 등을 통해 정책 도입 요구 ☞ 서울, 경기 등 타 시도 이미 추진 중이며,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고용노동* 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수준은 높지만 정규직 중소기업 취업유지 청년으로 참여대상 제한되어 정책대상 범위의 포괄성 측면에서 한계 존재 지적

각 시도별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검토 중

## 나. 희망키움통장 I & II / 내일키움통장 [보건복지부]

□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소득기준 및 근로소득장려금

**【2017년 희망키움통장 I 소득 상·하한 및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입 가능 소득하한액  (기준중위소득 40%의 60%)	396,703	675,468	873,820	1,072,171	1,270,523	1,468,874	1,667,226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225,000	383,000	495,000	608,000	608,000	608,000	608,000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26,465원씩 증가

**【2017년 희망키움통장 II 소득 상·하한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가입 가능 소득상한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826,466	1,407,225	1,820,458	2,233,690	2,646,923	3,060,156	3,473,388
유지기준**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 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2,548,641	2,548,641	2,548,641	3,127,166	3,705,692	4,284,218	4,862,743

\* 가입가능 소득상한은 소득인정액 기준임

\*\* 유지기준 소득상한은 근로·사업소득기준이며,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통장 유지 가능

## □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적립금 및 지원규모

## ○ 희망키움통장 I

지원 예시	3인 가구 (월소득 130만원)	본인저축 10 + <b>정부지원 36</b> = 월 46만원 ⇒ 3년간 약 1,700만원 +이자
	4인 가구 (월소득 160만원)	본인저축 10 + <b>정부지원 45</b> = 월 55만원 ⇒ 3년간 약 2,000만원 +이자
최대 지원	3인 가구	본인저축 10 + <b>정부지원 50</b> = 월 60만원 ⇒ 3년간 약 2,200만원 +이자
	4인 가구	본인저축 10 + <b>정부지원 61</b> = 월 71만원 ⇒ 3년간 약 2,600만원 +이자

\* 정부지원금 산출식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85]

## ○ 희망키움통장 II

- [지원액]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10 = 월 20만원  
⇒ 3년간 720만원 +이자

## ○ 내일키움통장 (월 저축액 10만원 선택 시)

최대	본인저축 10 + <b>정부지원 10</b> + <b>사업단 매출액 10</b> + <b>사업단 수익금 15</b> = 월 45만원 ⇒ 3년간 약 1,620만원 +이자
평균	본인저축 10 + <b>정부지원 10</b> + <b>사업단 매출액 10</b> + <b>사업단 수익금 8</b> = 월 38만원 ⇒ <u>3년간 약 1,368만원</u> +이자

□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 개요

구 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시행	'10. 4월	'14.7월	'13.3월	
가입 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b>생계·의료 수급가구</b>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b>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b> 가구	최근 1개월 이상 <b>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b>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5 또는 10만원	
정부 지원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소득 10만원 증가 시 8.5만원 추가) * 평균 33.4만원, 최대 61만원('16년)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저축액에 1:1 매칭	
기타 지원	없음	없음	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추가 지원 - 사업단별 매칭* + 수익금에서 최대 15만원	
평균 적립액	<b>1,562만원</b> (본인 360) + 이자 * 최대 2,600만원	<b>720만원</b> (본인 360) + 이자	<b>1,368만원</b> (본인 10만원 경우) + 이자 * 최대 1,620만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b>탈수급</b>	통장 3년 유지 ( <b>교육·사례관리 이수</b> )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으로 <b>취·창업</b>	
예	'18	18,428백만원	51,028백만원	5,248백만원
	'17	27,328백만원	45,994백만원	6,939백만원
누적 지원 인원 (17.7)	40천 가구	58천 가구	17천명	
지급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및 결혼 자금</li> <li>· 사업의 창업·취업 자금, · 국민연금 미납금</li> <li>·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계좌(ISA) 상품 가입 등</li> </ul>			

\* 시장진입형 1:1, 매출 10%이상 사회서비스형 1:0.5, 매출 10%이하 사회서비스형 1:0.3

## □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실적 (2016.12 기준)

## ○ 희망키움통장 I

연도	가입자	국고 환수자	탈수급·만기 해지 가구	탈수급 해지율	유지 가구	유지율
계	37,913	11,517	17,881	47.2%	8,515	22.5%
2010	10,698	3,558	7,135	66.7%	5	0.0%
2011	4,093	1,265	2,824	69.0%	4	0.1%
2012	3,046	936	2,104	69.1%	6	0.2%
2013	9,083	3,516	4,863	53.5%	704	7.8%
2014	5,286	1,545	758	14.3%	2,983	56.4%
2015	2,680	553	173	6.5%	1,954	72.9%
2016	3,027	144	24	0.8%	2,859	94.4%

## ○ 희망키움통장 II

연도	가입자	해지 가구				유지 가구	유지율
		환수해지	비율	지급해지	비율		
계	43,706	5,375	12.3%	733	1.7%	37,598	86.0%
2014	10,257	2,347	22.9%	513	5.0%	7,397	72.1%
2015	14,989	2,739	18.3%	214	1.4%	12,036	80.3%
2016	18,460	289	1.6%	6	0.0%	18,165	98.4%

○ 내일키움통장

연도	가입자	해 지 자				유지자	유지율
		환수해지	비율	지급해지	비율		
계	15,357	5,925	38.6%	2,172	14.1%	7,260	47.3%
2013	5,274	3,330	63.1%	1,619	30.7%	325	6.2%
2014	2,216	1,123	50.7%	333	15.0%	760	34.3%
2015	3,241	953	29.4%	179	5.5%	2,109	65.1%
2016	4,626	519	11.2%	41	0.9%	4,066	87.9%

**다. 디딤씨앗통장 [보건복지부]**

□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이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으로, 1인 월 40,000원 이내 1:1 매칭지원 (2017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아동 2004, 2005년생 가입 가능)

○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 도움을 받아 일정 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하게 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최대 4만원까지 매칭해서 적립해 줌

- 정기국회에서 추가예산 42.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130억 원에서 172.5억 원으로 증가되어 2017년부터 정부 매칭지원 금액 확대 3만원 → 4만원

○ 추가 적립 관련하여, 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4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6만원(연간 552만원)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4만원 까지 가능

- 디딤씨앗통장에 모인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 꿈을 실현하는데 있어 디딤이 되는 종잣돈(Seed Money)으로 사용됨
- (참여대상 선정기준 및 자격유지 기준) 디딤씨앗통장의 선정기준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같은 보호대상아동과 2011년부터 일부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함
  - 지원대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지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 (생계, 의료 급여)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함 (**※ '17년 신규선정 대상 : 만12세(2005년생), 만13세(2004년생)**)
    -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경우 '11년부터 만 12세 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16년부터 만 12세, 만 13세까지 가입 자격이 확대된 바 있음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함.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함
- (중복지원 불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함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함
  -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이 가능함(2013. 1. 1~)

-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함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함
- 정부의 매칭 지원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로 함

### 라. 청년희망키움통장

구 분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시행	'18년 시행 예정	'10. 4월	'14.7월	'13.3월
가입 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b>생계 수급 청년(15~34세)</b>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50% 이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b>생계·의료 수급가구</b>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b>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b>	최근 1개월 이상 <b>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b>
본인 저축액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더 공제하여 통장에 자동 적립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정부 지원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 평균 30만원, 최대 50만원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소득 10만원 증가시 8.5만원 추가) * 평균 33.4만원, 최대 61만원('16년)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저축액에 1:1 매칭

구 분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기타 지원	없음	없음	없음	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추가 지원 - 사업단별 매칭* + 수익금에서 최대 15만원	
평균 적립액	1,440만원(소득공제 360) + 이자 * 최대 2,160만원	1,562만원(본인 360) + 이자 * 최대 2,600만원	720만원(본인 360) + 이자	1,368만원(본인 10만원 경우) + 이자 * 최대 1,620만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3년 이내 탈수급	통장 3년 유지(교육·사례관리 이수)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	
예산	'18	11,039백만원	18,428백만원	51,028백만원	5,248백만원
	'17	-	27,328백만원	45,994백만원	6,939백만원
누적 지원 인원 (17.7)	5천명('18년)	40천 가구	58천 가구	17천명	
지급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및 결혼 자금</li> <li>· 사업의 창업·취업 자금, · 국민연금 미납금</li> <li>·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계좌(ISA) 상품 가입 등</li> </ul>				

주: 시장진입형 1:1, 매출 10%이상 사회서비스형 1:0.5, 매출 10%이하 사회서비스형 1:0.3

## 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 □ 사업개요

- 「내일채움공제」, 고용부 「인턴제 등 고용촉진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투자여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중견기

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각각 900만원, 400만원)하여 자산형성 지원
- 청년 300만원 + 정부 900만원 + 기업 400만원 → 2년 후 1,600만원(+이자)

□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확대 개편내용

- (가입유형 확대)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까지 확대

【청년공제 가입 유형】

①청년취업인턴제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고용촉진사업 (인턴기간 1~3개월)
②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I 유형), 청년 미취업자(II유형)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및 빈곤탈출을 촉진하는 고용촉진사업 (취업지원기간 9~16개월)
③일학습병행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고용촉진사업 (학습근로기간 6~48개월)

○ 사업추진절차



○ 가입대상

- (청년) 만 15세~34세 청년으로 인턴제, 취성패(I·II유형), 일학

습병행제 수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자

- (기업) 각 유형별 참여조건을 충족하고,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공제부금 납입

- (핵심인력 납입금) 300만원을 매월 12.5만원씩 자동이체 납부
- (기업기여금) 공제 가입유형에 따라 납부주체가 정부, 기업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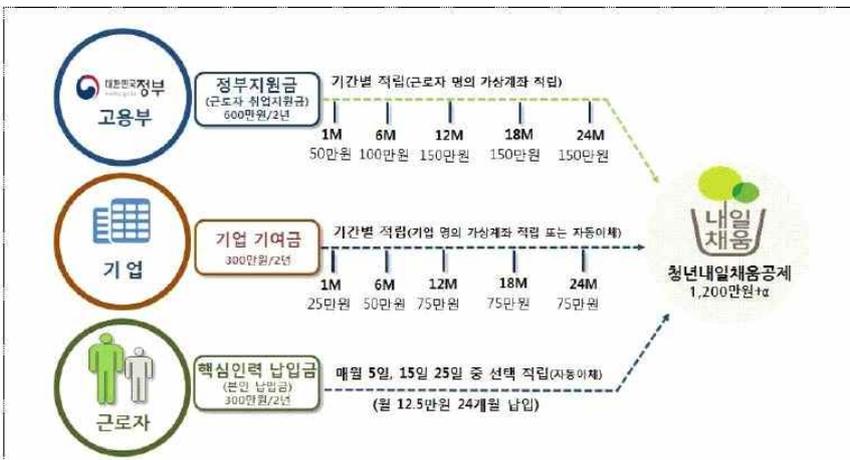
○ (정부) 청년에게 지원되는 취업지원금(9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적립

○ (참여기업 혜택) 청년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 혜택 부여('17.1월 현재 41개 사업)

○ (내일채움공제 연계) 청년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3~5년)하여 장기근속을 지속적으로 유지

○ (중도해지시 환급) 계약 유지기간, 중도해지 사유, 공제부금 적립주체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추경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변경내용

○ (저축방식 및 적립기간)청년·기업 지원금 상향

- 청년지원 : 2년 600만원 → 900만원 (+300만원 상향)
  - (당초)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18·24개월 각 150만원
  - (변경) 1개월 75만원, 6개월 150만원, 12·18·24개월 각 225만원
- 기업지원 : 참여경로별 상이한 지원금을 상향·통일\*하고 청년 적립 강화 (+100만원상향)
  - (종전) 2년 500만원(인턴경로) 또는 600만원(취성패II) [청년에게 300만원 적립]
  - (개편) 2년 700만원(인턴, 취성패II 공통)으로 상향 [청년에게 400만원 적립]

↳ 일학습병행제는 추경 통과 후에도 여전히 기업 지원금 없음

【참고】 만기공제금 구조

- \* (종전) 청년 2년 300만원 + 기업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1,200만원  
↳ 인턴경로500만원 또는 취성패(II)경로600만원 받아 적립
- \* (변경) 청년 2년 3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900만원 = 1,600만원  
↳ 인턴·취성패(II) 모두 700만원 지급하고, 이중 400만원 적립

○ (지원인원 확대) 추경을 통해 지원인원 신규 5천명 추가

- 청년인턴 3,000명 + 취성패 1,500명 + 일학습 500명

○ (적용범위) 2017년 추가 5천명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해소 위해 2017년 가입자 및 2016년 가입자까지 상향된 지원금 적용

○ (선정기준 및 자격유지 기준 관련) 청년공제의 참여경로가 확대됨

- 3개의 참여경로(인턴(1~3개월), 취성패,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만 청년공제에 가입 가능했으나 일정한 요건에 한하여 청년공제

가입에 대한 허용방안 마련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인턴기간 없이  
청년공제 가입허용에 대한 논의 진행 중

〈표〉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비교

구분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목적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
가입 대상	중소 기업	인력지원특별법상 영위업종 중소·중견기업	인턴제, 취성패, 일학습병행제 수료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한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	사업주가 지정한 재직근로자 * 연령제한 없음 (가입자 평균연령 38.5세)	인턴제, 취성패, 일학습병행제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된 자 * 만 15세 ~ 34세 청년
신청기한		-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가입기간		5년(최초) 3~5년(재가입)	2년 *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가능
가입방법		중진공 지점가입 홈페이지 가입	홈페이지 가입
납입비율		근로자 : 기업 = 1 : 2이상	근로자 : 기업 : 정부 = 1 : 1.3 : 3
적립금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2년, 1,600만원
납입방법		계약자별 은행계좌에서 중진공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	(근로자) 자동이체 납부 (기업) 정부에서 중진공으로 적립 또는 기업 직접 납부 (정부) 정부에서 중진공으로 적립
납입주기		계약자 각각 매월 납부	(근로자) 매월 납부 (기업, 정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6·12·18·24개월 후

## 바. 미래행복통장 [통일부]

-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동기를 부여하여 고용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함
  - (적립금액) 신청일 직전 3개월간 세전 근로소득 중 월 최고금액의 50 퍼센트 범위 내에서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5만원 단위 금액으로 함
  - (지원신청자 자격기준) 미래행복통장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1.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일 것
    2. 정착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의 상태일 것.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한 상태이며,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상태일 것. 다만, 취업 중이라 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영업 종사자는 제외된다.
    4.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임금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5. 정부·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혜택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6.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8.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9.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가 된 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새롭게 도입된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집행률이 목표치의 3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사업 2016년 예·결산 내역’에 따르면 “예산액 11억 9000만원 가운데 31%인 3억 6,900만원만 집행하고, 8억 1,700만원이 불용”

- 모집대상 인원수로는 400명을 대상으로 계획했으나, 192명만이 가입
-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 미만의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가운데 76.7%가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최소납입금을 조정할 필요성 높아짐.
- 또한, 최소적립액 10만원과 최대적립액 50만원의 경우 1:1로 매칭 시, 적립액이 높을수록 지원혜택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 근로소득이 높은 탈북민의 지원혜택이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

□ 2017년 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의거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가 시행되고 있으며, 가입률 제고 및 제도 보완을 위하여 운영지침을 개정할 바 있음

○ 사용용도 제한 완화

- 사용용도에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상품 가입 추가
  - 현재 사용용도는 목돈이 필요한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등만 가능

○ 신청자격 완화

- 한 직장 3개월 ⇒ “한 직장” 부분을 삭제하여 동일직장이 아니더라도 가입 가능

○ 적립금액 산정 기준 변경

- 신청월 직전 1개월 세전 근로소득 기준 ⇒ 신청월 직전 3개월 간 세전 근로소득 중 월 최고금액 기준
- 평균 세전 월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 ⇒ 평균 세전 월 근로소득의 50% 범위 내
- 적립금액 산정 기준 관련 탈북민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의 폭 확대

○ 약정 금액 변경 제한 완화

- 약정 2년 후 1년 단위로 변경 ⇒ 약정 후 연 1회 변경을 허용하여 약정금액 변경 기회 확대

○ 일시중지 기간 확대

- 일시중지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최대 1년까지 가능

○ 금융교육

- 연 1회 이상 이수 ⇒ 가입기간(초기 2년) 동안 1회 이상 이수

○ 초기 약정기간(2년) 이후 자발적 의사로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 “초기 약정기간(2년) 이후 연장된 약정기간 중 자발적으로 약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과 그 이자까지 지급“ 규정 추가

## 사.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 [여성가족부, 폐지]

-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며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 근거 신설('14.7.22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에 따르면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 2010년 4월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도입 및 시행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양육과 자립을 지원 (최저생계비 150%까지)
  - 아동 양육·의료비, 검정고시학습비, 자산형성계좌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 미혼모의 양육과 자립 실태조사 실시
  - 미혼모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실시(지자체 공무원 대상)
  
- “2017년 한부모가족사업안내”에 따르면, 2015년 자산형성계좌지원이 만기도래 되었으며, 2017년 사업예산(국비)에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에서 자산형성계좌지원 사업량 및 예산이 2016년, 2017년 모두 책정되지 않음

## 제4장

## 2017년 사업예산(국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위	2016년도		2017년도	
		사업량	예 산	사업량	예산
합 계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90,690	72,442	188,387	92,540
- 아동양육비	명	75,000	66,960	81,260	87,058
- 추가 아동양육비	명	2,400	1,080	2,400	1,080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명	113,000	4,175	104,437	4,175
- 생활보조금	가구	290	132	290	132
- 명의인 우편통보 요금	-	-	95	-	95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512	1,970	2,512	2,017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지원	명/가구	2,495	1,446	2,495	1,543
• 아동양육비	명	2,200	1,211	2,200	1,308
• 검정고시 학습비(교육비 포함)	가구	175	131	175	131
• 자산형성계좌지원	가구	-	-	-	-
• 자립촉진수당	가구	120	104	120	104

## 아.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최근 이슈 사례]

### □ 도입 목적 및 배경

-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
- 정책 설계 당시(2015년) 정책대상 연령인 만18세~ 34세의 경기도 청년인구는 약 257만 명,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계층은 약 36만 명으로 추정함( 시도별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음, 22.2%)
- 경제적 안정을 통해 미래설계를 돕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유지를 통해 미래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 자산형성이라는 1차 목표 이후 → 금융교육, 맞춤형 재무컨설팅,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해 청년들의 긍정적인 삶의 질 변화로 발전

### □ 정책 방향

- 자산형성사업 종료 이후 미래를 위한 재투자 유도 설계 : 주거마련, 창업자금, 교육비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계
- 사례관리 : 욕구맞춤형 재무설계 및 관리
-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 유도를 위한 매칭펀딩 방식

〈표〉 일하는 청년 통장 매칭방식

구분	기간	매칭펀딩방식			중도해지율 (%)
		개인	경기도	민간기부금	
1차(500명)	'16.05~	100,000원(1)	100,000원(1)	72,000원 (0.72)	4.8%
2차(1,000명)	'16.12~	100,000원(1)	172,000원(1.72)	-	1.1%
3차(5,000명)	'17.06~	100,000원(1)	172,000원(1.72)	-	-
4차(4,000명)	'17.11~	100,000원(1)	172,000원(1.72)	-	-

※ 3년 만기(1,000만원) : 본인 적립금+경기도 지원금+민간기부금+이자 = 1,000만원

※ 2년 적립 : 본인 적립금+경기도 지원금+민간기부금+ 이자 = 적립금액

- 중앙정부의 유사사업 및 중복 참여 배제원칙 : 희망키움통장 I·II(복지부), 내일키움통장(복지부),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시), 청년내일채움공제(노동부) 등
  
- 관리운영·수행기관
  - 경기도 : 기본계획수립, 운영지침 개발과 보급, 관련 공무원 교육
  - 시·군 : 사업홍보, 참여신청 및 접수, 자격여부 심사 및 선정 통보
  - 경기복지재단 : 실행계획 수립, 참여자 저축관리 및 사후(사례)관리, 관련교육, 민간기부금 확보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공동모금회, 기타 유관기관
  
-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주 30시간이상 근로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
    - 1인 가구 기준, 165만 2,931원, 4인 가구 4,467,380원
  -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가능
  - 신청불가: 자영업자, 기타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마사회 포함), 국가근로장학생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일자리재단
  - 방문접수 : 읍면동주민센터(구비서류 보완)
  
- 선정기준

- 기본 요건 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배점 항목 : 가산점, 가구특성, 경기도 거주기간, 근로기간, 주거현황  
차량보유현황, 중위소득 기준구간 등

〈표〉 가산점 항목

항 목	제출 서류	비 고
3D업종	공장등록증명서 업종 코드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업태(제조업) 확인 재직증명서 확인	5점
제조·생산직근로자	사업자등록증 업태 확인(제조업)	5점
사회적경제조직근로자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정)서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인서	3점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본인작성) : 참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필수 첨부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근로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 계증명서
- 기타 추가 서류 : 가산점 해당자 증빙서, 부채증명 해당자(학자금대출)

□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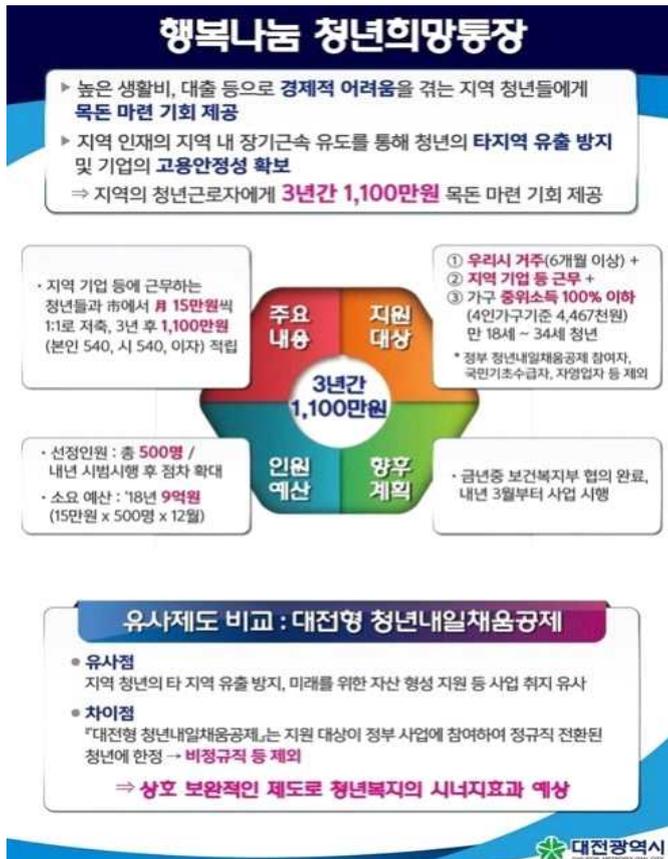
□ 참여자 현황

구 분	성별(%)		연령(세)			근로형태(%)							
	남	여	평균	연령(세)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차 500명	48.2	51.8	27.1	28.5	25.8	88.0	73.4	7.1	19.7	1.7	2.3	3.3	4.6
2차 1,000명	49.7	50.3	26.2	27.4	24.9	81.9	72.2	13.1	21.7	2.6	0.8	2.4	5.4
3차 5000명	42.6	57.4	26.5	28.1	25.3	72.3	65.5	18.0	20.5	2.4	1.4	7.2	12.6

## 자. 행복나눔 청년희망통장 [대전광역시, 최근 시행발표, 규모 확대]

### □ 행복나눔 청년희망통장 (2017.10)

- 연령기준 : 18~34세
- 소득기준 : 중위 100% (월소득 200만원 이하) ⇨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높은 선정기준
- 참여기간 및 매칭금액 : 3년, 15만원, 1:1 매칭 ⇨ 3년 적립 시 최대 약 1,500만원







제 5 장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제1절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추진 기본방향  
제2절 우리나라 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



# 5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 제1절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추진 기본방향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할 때 주요한 준거점은 포용적(Inclusive) 자산형성지원제도임
  -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는 그 동안 사회정책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자산 불평등을 정책대상으로 포섭하고 저소득층의 탈빈곤 더 나아가 빈곤예방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의되고 있음
  - 특히 자산형성지원제도는 규모에 있어서 정책대상을 한정적으로 정해서 시작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나 이러한 규모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가능하면 많은 대상을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특징임
  
-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러한 4가지 특성은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방향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첫째,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는 보편적(universal) 적용을 강조하고 있음
    - 보편성을 추구하는 일차적인 단계는 그 동안 자산축적의 기회에서 배제되어 왔던 빈곤층 및 저소득층을 자산형성지원제도에 포함(inclusion)하는 것을 의미함
    - 자산형성지원제도를 주창한 Sherraden(1991, 2016)은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이 통장들

을 통해 각종 사회적 위험들(노령, 실업, 질병 등)에 대처해 나가는 것을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이상적인 형태로 여기고 있음

- 다시 말하면, 현재 대부분의 자산형성지원제도들이 일차적으로 제도 출발단계에서 대상을 한정해서 실시하는 잔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1인 1통장의 보편적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함

○ 둘째,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는 누진성(progressive)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기존의 많은 저축프로그램들은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역진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판단은 두 가지 점에서 나타남. 첫째, 저소득층은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저축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음. 기존의 주택통장, 국가 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자산형성지원제도에 참여를 못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임.
- 둘째, 저축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저축액이 상대적으로 중상층보다 적기 때문에 혜택 (예를 들어, 세금혜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러한 상황에서 더 가난한 사람에게 좀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여 저축을 장려하는 누진성을 강조하는 것이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임. 극빈층을 자산형성지원제도에서 배제하기 보다는 극빈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에게 더 높은 매칭율을 적용하는 것은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누진성을 의미함

○ 셋째, 자산형성은 자체로 일생동안(life course) 진행되는 장기적(long-term)인 과정임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정책방향은 다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우선, 가능하면 어린 나이에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s)가 확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일생동안 지속적인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제도 간 연계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 아동 청소년기에 시작된 저축을 성인기와 장년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저축 제도 연계를 의미함. 싱가포르가 이러한 연계적인 저축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임. 싱가포르의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s), 대학학자금저축계좌(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s), 개인강제저축프로그램(Central Provident Fund)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특성은 적절성(adequacy)임
  - 적절성이란 저축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저축하면 어느 정도 저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의미함. 저축프로그램의 목적이 탈 빈곤이라고 하면 참여자의 어느 정도가 탈 빈곤을 달성하였고 또한 제도 자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알맞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또한 저축목적(주거, 교육, 창업 등)으로 설정한 경우 어느 정도 그 저축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를 의미하기도 함. 추가적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발달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포함하기도 함

〈표〉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 발전방향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 평가 구성요소	주요 특성
보편성(Universality)	√ 자산형성의 공평한 기회 √ 저축제도 접근권 보장 √ 규모의 확대
누진성(Progressiveness)	√ 저소득층에 대한 인센티브 √ 매칭율의 조정 √ 추가적인 세제 혜택
일생주기성(Life-long)	√ 가능하면 출생부터 저축 시작 √ 저축의 연계성 확보 √ 지속성 확보
적절성(Adequacy)	√ 저축프로그램 목적의 달성 정도 √ 경제적 사회적 발전 달성 정도

자료: Han (2013: 57)

## 제2절. 우리나라 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

- 하나의 저축프로그램이 위에서 설명한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4가지 요인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음.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 요인들은 하나의 이념형(Ideal Type)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각 저축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요인들을 충족시키는지에 관한 논의는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먼저,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4가지 평가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을 비교 평가함

〈표〉 희망키움통장 I·II 및 내일키움통장 평가

평가 구성요소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보편성 (Universality)	△	△	△
누진성 (Progressiveness)	△	○	△
일생주기성 (Life-long)	△	△	△
적절성 (Adequacy)	○	△	△

## ○ 희망키움통장 I

- 보편성: 구체적으로 수급자의 소득범주를 한정해서 적용하고 있고 적용범위대상의 5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은 중간 수준의 평가를 받음
- 누진성: 전체적으로 참여대상에게 매칭을 제공하고 있어서 누진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극빈 수급층(최저생계비 60% 미만)의 참여가 배제되는 점은 문제로 제기됨
- 일생주기성: 희망키움통장 I 과 희망키움통장 II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제도와의 연결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중간 정도의 평가를 내림
- 적절성: 탈수급이 제도 목표이고 이 목표달성율이 6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적절성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됨

## ○ 희망키움통장 II

- 보편성: 전체 참여대상 인원의 규모에 비해 참여비율이 낮다라는 점에서 보편성은 낮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존재함

- 누진성: 근로빈곤층에게 매칭을 제공하여 저축기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누진성은 높다는 평가를 내림
- 일생주기성: 희망키움통장 I 과 희망키움통장II의 연계로 인해 중간 정도의 평가를 내림
- 적절성: 참가자의 저축목적에 따른 목적달성 가능성은 중간 정도의 평가를 내림

○ 내일키움통장

- 보편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라는 대상범주를 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대상의 중간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서 중간 정도의 평가를 내림
- 누진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칭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누진성의 확보가 있으나 내일키움통장의 높은 매칭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참여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은 누진성에 반하는 상황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내일키움통장의 누진성은 중간정도의 평가를 내림
- 일생주기성: 내일키움통장 종료 후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연계시켜 놓고 있어서 일생주기성의 제도적 기초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중간 정도의 평가를 내림
- 적절성: 사업목표가 참여자의 취·창업 및 교육이수인데 성공적인 졸업자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중도 탈락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중간정도의 적절성 평가를 내림

□ 다음으로,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4가지 평가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서울시희망플러스통장을 싱가포르 아동발달계좌 및 CPF와 함께 비교 평가함

〈표〉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평가

평가 구성요소	한국		싱가포르	
	디딤씨앗통장	서울시희망플러스통장	아동발달계좌	CPF
보편성 (Universality)	△	×	○	○
누진성 (Progressiveness)	○	○	×	×
일생주기성 (Life-long)	○	×	○	○
적절성 (Adequacy)	△	△	△	△

자료: Han(2013)

#### ○ 디딤씨앗통장

- 보편성: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편성에 있어서 중간정도의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누진성: 위험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누진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일생주기성: 아동발달계좌의 장기간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아동발달계좌 이후 국민연금과 연계 가능성이 있기에 높은 수준의 평가를 내림
- 적절성: 저축을 통해서 사회경제적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것(적절성)인가에 대해서는 중간정도의 평가를 내림

#### ○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 보편성: 대상자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으나 제도가 종료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 누진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누진성은 높은 평가를 받음

- 일생주기성: 제도 종료 후 다른 저축프로그램과 연계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음
- 적절성: 저축 종료 후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할지는 중간정도의 평가를 내림

□ 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및 추진경과

○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한계에 대한 문제 인식

- 기존 자산형성지원의 적용대상 포괄성 한계
- 자산형성지원 사업 간 또는 소득보장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 민간 참여의 한계로 인한 매칭금의 정부예산 의존 확대
- 지자체 자체 사업과의 중복 조정 및 연계 문제
-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 체계 및 사례관리의 한계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확대 추진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지원 확대 추진방향

- 우리나라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 과정 및 운영에 대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소득보장정책과 더불어 자산형성지원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정책집단에 대해 확대하여 빈곤 예방 및 자립 지원체계 마련
- (정책목표) 저소득층의 탈 수급, 탈 빈곤 지원뿐 아니라 지속적인 저축을 통해 저축행태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 (기본방향) 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근로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저축한 만큼 정부 및 지자체 또는 민간이 함께 저축해주는 계좌를 정책대상별로 도입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지원체계 구축 추진

- 기초보장의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EITC),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자산형성지원제도와 연계함으로써 근로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 유인 및 자산형성 지원규모 확대방안 모색
- 생애주기별 저소득층 규모 및 자산보유 실태 등 정책 수요 분석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방향 및 정책대상 범위 선정
  - 현행 중위소득체계를 기준으로 적용대상 가구를 통합 관리
  - 생애주기별로 개인별 1인 1계좌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저축이 가능하도록 설계
    - 영유아(만 0-5세) 및 취학아동(만 6-11세/ 만 12-17세)
      - \*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디딤씨앗통장 대폭 확대
    - 청년(만 18세-34세) ☞ 청년저축계좌 신규 도입
    - 중장년(만 35-64세) ☞ 희망키움통장 I & II, 내일키움통장 확대 시행
    - 장애인 ☞ 장애인 자립기반 저축계좌 신규 도입하고, 생애주기별 저축계좌 참여 시 장애인 추가 매칭방식으로 지원수준 확대
      - ☞ 일하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체계를 도입하고, 근로활동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와 연계하여 도입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상별 사업 운영체계 구성
  - 참여대상 선정기준 및 자격유지 기준
  - 저축방식
  - 적립기간
  - 매칭비율

- 대상선정 및 지원방식 확대 개편 가능성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사업 간 연계 및 추진방안 제시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사업 유형 및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근로활동에 따라서 저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간 연계 방안 마련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방향 및 정책대상 범위 설정
  - 현행 중위소득 체계를 기준으로 적용대상 가구를 통합 관리하되, 생애주기별로 개인별 1인 1계좌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저축이 가능하도록 설계
  - 생애주기를 ‘아동-청년-중년-장년’ 시기로 구분하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경우 일생 동안 연령대마다 1회씩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총 4회까지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
    - 영유아 (만 0~5세) / 초등 (만 6~11세) / 중고 (만 12~17세)
      -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디딤씨앗통장을 시설 보호아동 및 일부 연령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이 아니라 중위소득 50% 또는 60% 저소득가구의 아동까지 확대하여 보편성을 제고하고 일생주기성을 제고함
      - 특히, 2018년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과 연계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 및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청년 (만 18~34세) ⇨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도입 및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연계성을 강화하고 최근 경쟁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별 청년통장의 편차를 해소함

- 2018년 사병 급여 인상에 따른 “전역 시 자산축적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소득기준과 상관없는 보편적 제도로 입대 전 또는 전역 후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청년층 참여대상 사업으로 의무복무 사병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검토 필요
  - ❖ 수도권에 근무하는 사병 224명을 대상으로 저축태도, 저축프로그램 참여여부, 저축효과 등 저축프로그램 도입 가능성을 연구한 Hong & Han(in press)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 저축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병은 조사대상의 약 2/3 정도로 나타나며, 사병들의 군대생활(79.2%), 저축습관(80.0%), 그리고 전역 후 삶을 준비(86.1%)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 ❖ 저축하고 싶은 월 저축액은 5~10만원(43.4%)이 가장 높았으며, 3~5만원(32.1%), 10만원 이상(17.2%) 순으로 나타남
  - ❖ 저축프로그램에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사병들의 연령(나이가 많을수록 참여의사가 높음), 계급(이병과 일병에 비해 병장 참여의사가 높음), 가족관계(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참여의사가 높음)인 것으로 나타남
  - ❖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17.11.28)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정책 중 “청년 임대 청약통장”과 연계하는 방안 추가 검토 필요
- 중년(만 35~49세) ☞ 희망키움통장 I & II과 내일키움통장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희망키움통장 II을 중위소득 60% 수준까지 확대 시행하여 중년층 주거구입, 자녀교육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산

을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생애주기별로 희망키움통장 I과 II 연계하여 연속적으로 참여 가능
- 장년 (만 50~64세) ☞ 희망키움통장 I & II과 내일키움통장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희망키움통장 II을 중위소득 60% 수준까지 확대 시행하여 장년층이 주거비용, 노후준비 등을 위해 자산을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장년층의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후 적립금 활용 목적 및 용도 중에 하나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제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간 연계
- 장애인 ☞ 장애인 자립기반 저축계좌 신규 도입하고, 생애주기별로 장애아동 및 근로장애인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소득기준 및 지원수준 설정, 일하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근로활동 참여 장애인 대상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와 연계 시행
  - 장애인 대상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 ❖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는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이 낮으며, 추가적으로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생계비 마련의 어려움이 있음
    - ❖ 장애인은 대표적 취약계층으로 소득이 낮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소득의 일부를 저축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김자영·한창근, 2016a, 2016b, 2017)
    - ❖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축프로그램의 경우 캐나다의 사례가 있음
    - ❖ 국내에서는 디딤씨앗통장에서 장애시설아동을 포함하고 있음

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기준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는 상황임

- ❖ 최근 발달장애인 대상의 통장 사업을 서울시에서 준비 중이며, 전국 단위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 논의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제도 연계(매칭률 상향조정,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례관리 연계 등)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제 6 장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설계



# 6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설계

###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설계

####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상별 사업 운영체 계 구성

##### - 참여대상 선정기준 및 자격유지 기준

- 1차 개편(2019) 시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 시행 후, 2022년 중위소득 60%까지 2차 개편을 통해 확대
- 일자리 상향 이동이나 소득이 증가할지라도 중위소득 수준까지 사업 참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축 및 근로활동 장려

##### - 저축방식

- 아동의 경우 5만원, 청년 및 중장년의 경우 저축 및 매칭금액은 10만원 등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10~20만원 수준에서 저축 금액 확정방식 또는 최대 30만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한 자유저축 방식의 확대방안 검토

##### - 적립기간

- 아동 저축계좌의 경우 만 18세 도달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저축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설계하되, 영유아, 취학 등을 고려하여 6년씩 3회로 구분하여 적립금 활용 기회 제공
- 청년 및 중장년 대상 저축계좌 ☞ 최초 3년(2년 경과 후 해지 기회 제공)에 2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설계

##### - 매칭비율

- 희망키움통장 I의 경우 탈 수급 조건을 고려하여 현행 매칭비율

을 유지하고,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는 디딤씨앗통장 5만원(1:1 매칭), 희망키움통장 II,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중위소득 50%까지 1:1(10만원), 중위소득 50~60% 구간 및 10만원 초과 적립 시 1:0.5로 차등하여 적립

- 대상 선정 및 지원방식 확대 개편 가능성
  -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신규 참여대상자 규모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중 일정 비율씩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 검토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간 연계 및 추진방안 제시

- 생애주기별 사업유형과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아동-청년-중년-장년’ 각 시점에 참여 연계 및 적립금 이전, 근로에 따른 사업 참여와 저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간 연계방안 마련
-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및 자녀장려금 등 연계,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장려금 연계, 두루누리 지원사업 및 국민연금 납부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계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기본모형

○ 정책대상

- 영유아(만 0~5세)/취학아동(만 6~17세) ☞ 아동발달계좌 전면 확대
  - 저소득층 아동 및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매칭비율 차등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 2018년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과 연계하여 자녀수에 따른 차등 매칭방안 검토

- 청년 (만 18~34세) ☞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도입 및 참여대상자 확대를 통한 지자체 청년 희망통장 연계
    - 사병 급여 인상과 연계한 의무복무 사병 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 청년층 출산장려 및 주택구입과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자녀수 차등 매칭형 자산형성 지원사업 Youth HOPE(Home Ownership Plus Education)
  - 중년 (만 35~49세) ☞ 희망키움통장 확대 시행
    - 청년층 및 중년층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등 근로활동 지원정책, 생애주기별 주거복지 로드맵 등 주거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자산형성지원
  - 장년 (만 50~64세) ☞ 희망키움통장 확대 시행
    - 저축 적립금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제고 연계
- 소득기준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정책대상
- 1차 개편(2019) ☞ 중위소득 50% 이하 전면 확대 (1:1 매칭)
  - 2차 개편(2022) ☞ 중위소득 50~60% 이하 확대 (1:0.5매칭)
- 참여대상 비율 ☞ 5%
- 소득기준 충족 참여대상 가구 중 연도별 신규 참여가구 비율
- 저축금액 및 매칭비율
- 영유아(만 0~5세)/초등(만 6~11세)/중고(만 12~17세) ☞ 5만원 (1:1)
    -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 적용 가능
    - 시설외소 아동에 대한 차등 지원
  - 청년 (만 18~34세) ☞ 10만원 (1:1) / 10~20만원 (1:0.5)

- 중년 (만 35~49세) ☞ 10만원 (1:1) / 10~20만원 (1:0.5)
- 장년 (만 50~64세) ☞ 10만원 (1:1) / 10~20만원 (1:0.5)

○ 참여기간(저축기간)

- 영유아(만 0~5세)/초등(만 6~11세)/중고(만 12~17세) ☞ 만 18세 도달 시점까지 최대 6년 + 6년 + 6년
- 청년 (만 18~34세) ☞ 3년 + 2년 연장 가능
- 중년 (만 35~49세) ☞ 3년 + 2년 연장 가능
- 장년 (만 50~64세) ☞ 3년 + 2년 연장 가능
  - 각 생애주기별로 희망키움통장 I & II 연계 참여 가능

○ 소득기준 확대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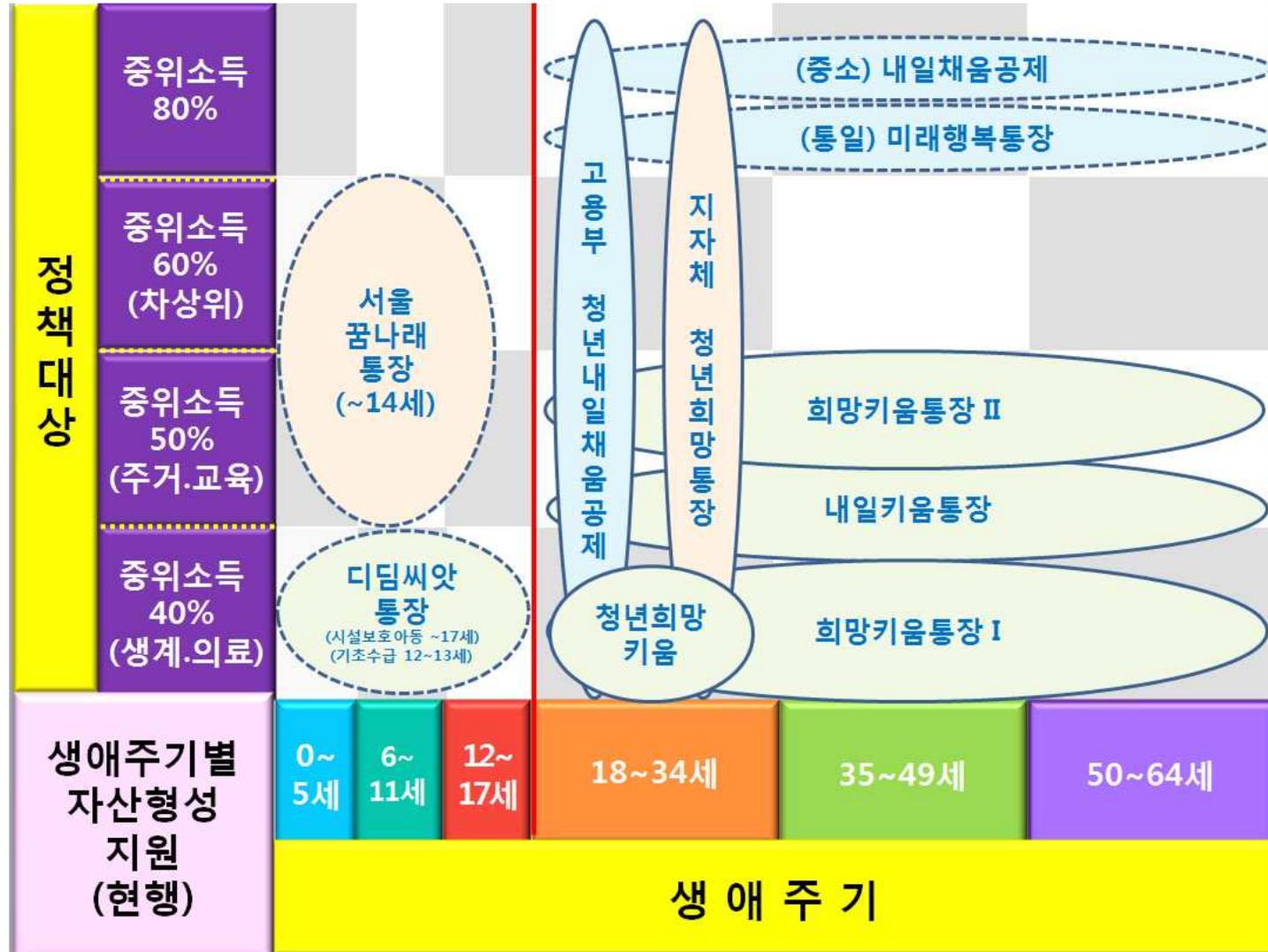
- 2019년 기본모형(수급가구 & 중위소득 50%이하)으로 우선 시행
- 2022년 이후 중위소득 60% 이하로 전면 확대

○ 참여비율 확대모형

- 기본모형에서 연도별 신규 사업 참여규모를 10%로 확대한 모형

○ 혼합모형

- 소득기준 확대모형과 참여비율 확대모형을 혼합한 모형









제 7 장

자산형성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 7

## 자산형성 지원체계 운영을 <<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 □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 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

○ 통장 사업별 지지체,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은행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

\* ex) 희망키움통장Ⅰ 적립은 지자체, 희망키움통장Ⅱ는 민간위탁기관(11개 광역자활센터 및 5개 지역자활센터 협회 등)

-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지자체 업무과중과 금융사례관리 진행의 어려움, 특히 지자체의 조직 변경에 따른 잦은 문의, 일부 시군구의 경우 1인이 해당 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인수·인계 문제 등 발생

- 통장별 프로세스의 세부적으로 차이\*에 따른 업무이해도 편차, 모집(10일)→등록(20일)→장려금지급(말일)이 매월 진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누락되는 문제 발생

\* ex) 적립의 경우(희망키움통장 소득기준 vs 내일키움통장 성실참여), 해지 시(희망키움통장은 1회 해지 vs 내일키움통장은 2회 해지)

○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별도 전달체계 구성(매월 적립업무의 광역자활센터 이행, 사례관리&교육 등)하였으나 정보 접근성 제한(예. 소득변동, 수급유형변경, 전출입, 가구원 변동 등), 여러 시군

구 지자체와 소통부족으로 인한 참여자 관리 미약

- 별도 전달체계 구성의 실효성 의문: 광역자활센터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사례관리 및 교육 기능 저하
  - \* 11개 광역자활센터 및 5개 지역자활센터협회
- 광역전달체계로의 통장사업 업무 수행의 적절성·책임성 부족
  - 희망키움통장II사업 참여자 발굴 및 가입자 소득변동, 전출입 등 변동사항에 대한 업무진행은 지자체가 주도함에 따라 업무분할 & 협조 제한
  - \* 광역자활센터 역할: 매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15case 심화사례관리(1인당), 교육지원(연 2회), 일반 사례관리 진행(연 2회) 등

○ 전산시스템 미 연계

- 사업의 지원 시스템인 행복e음과 금융시스템간 정보 처리가 자동 연계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의 적립액 정보 등을 행복e음에서 담당자의 PC로 내려 받아 은행 시스템에 등록·처리하는 수기방식으로 수행, 이로 인해 자료 손상 및 누락 사례\* 발생
  - \* ex) 적립액 오류 신규 가입자 등록 및 적립 누락 등
- 민간위탁기관의 금융사고의 위험성 존재,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적립업무를 처리하는 희망키움통장II의 경우 가입자 금융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우려 높음
  - \* 민간위탁기관의 PC 해킹으로 적립금 지급 업무를 조작하여 특정 계좌로 인출 하는 금융사고 발생(16.5)

□ 자산형성 지원체계 거버넌스 개편 방향

○ 일원화된 시스템 운영

- 중앙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가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늘어났지만,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각 사업주체들의 저축프로그램에 차별성 부족(중복적인 저축프로그램 난립)
- 다양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사업 참여자의 이력관리 등 행정적 효율성 및 연계성 제고

○ 사례관리 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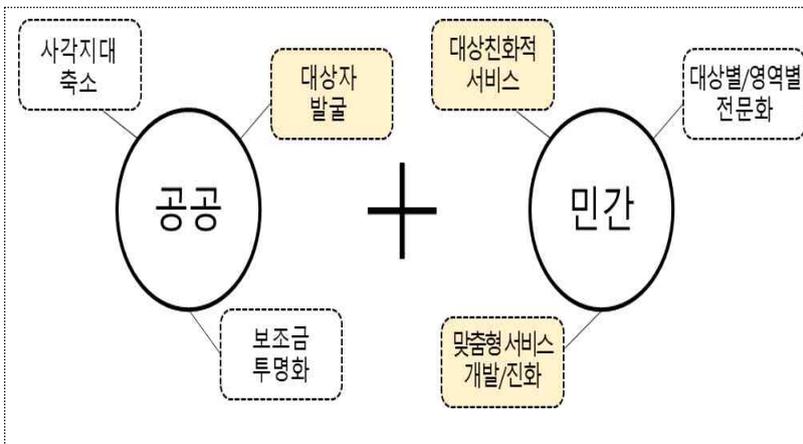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가 처한 문제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원을 연계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경제적인 자립 및 자산효과\*뿐만 아니라 자립의 방해요인 제거 지원
  - ❖ 자산효과: 경제적 안정, 미래지향적 사고 및 행동,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 아동복지의 향상
- 특히 부채관리, 가계 재무컨설팅 등 금융복지영역에 특화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산형성 지원사업 종료 시 지원금은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건전한 금융습관 함양에 기여

○ 대상 특성별 맞춤형 저축프로그램 개발

- 기존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수급자 대상, 차상위계층 대상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행정적인 취약계층 구분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
- 최근 저축금액의 다양화(10만원→5, 10만원), 청년대상통장 확대 등 맞춤형 저축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저축금액이나 매칭율, 저축기간 유연화, 저축프로그램 간 또는 타 소득보장제도와의 연계성 제고 등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음

○ 공공과 민간영역의 전달체계 기능 조정

- 자산형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과 민간 영역이 모두 필요하며, 주요 기능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가능
- 공공 영역에서 욕구가 있는 잠재적 대상자를 발굴하고, 민간영역에서는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사업 참여자의 자립 및 자활성공률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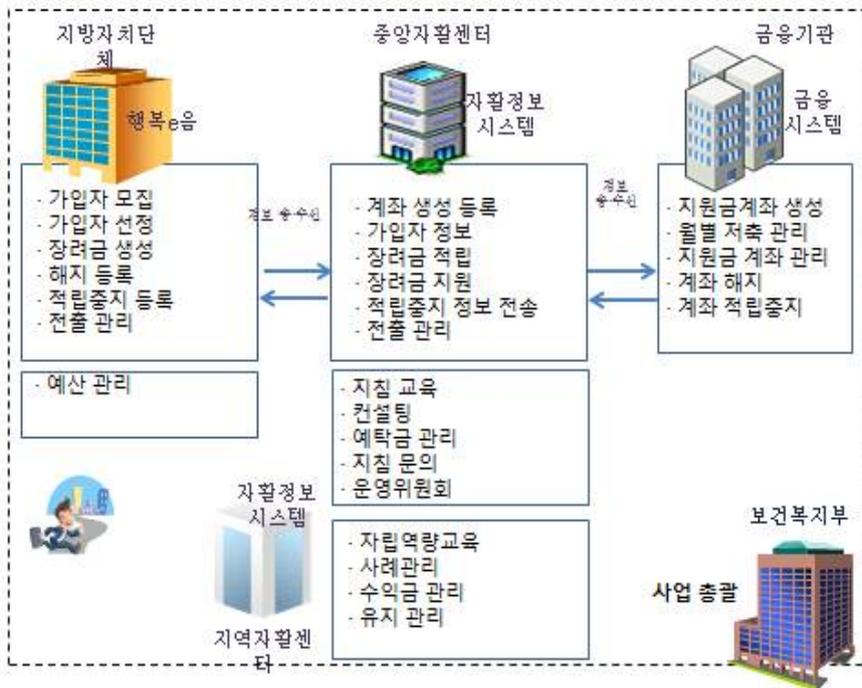
□ 자산형성 지원사업 거버넌스 개편방안

○ 지자체 및 중앙자활센터(가칭, 자활진흥원 개편 포함) 중심의 전  
달체계로 재편

구분	현 행			변 경	
	희망 I	희망 II	내일	희망 I·II	내일
가입신청	읍면동	읍면동	지역자활센터	읍면동	지역자활센터
대상자선정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장려금 적립주1)	시군구	민간위탁기관	시군구 *내일키움장려금: 중앙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지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해지 주1)	시군구	민간위탁기관	지역자활센터		
자립역량교육	-	민간위탁기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주2)	

주: 1) 장려금 생성 및 해지 승인은 시군구, 장려금 적립 및 해지지급은 중앙자활센터에서 실행  
2)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I 은 지자체에서 주관하고 지역자활센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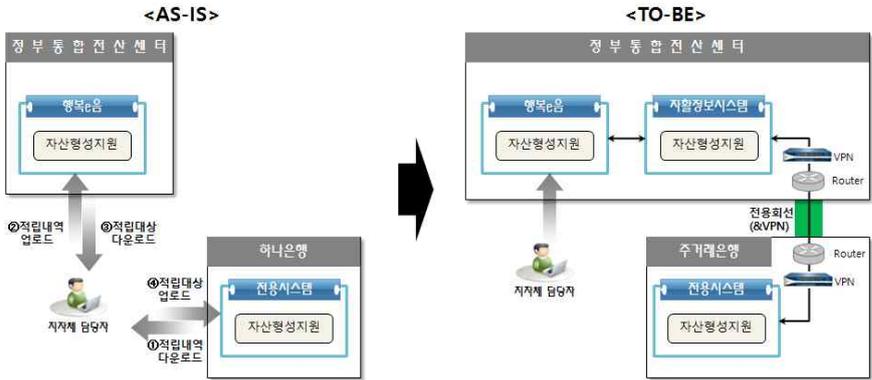
**【자산형성 지원사업 거버넌스 참여 주체별 역할분담】**



- 기존 3개 통장(희망키움통장 I, II, 내일키움통장) 및 디딤씨앗 통장과 신규 도입 예정인 청년 희망키움통장의 업무 추진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여 사업 총괄은 시도에서, 가입자 선정 및 관리는 시군구에서 수행
- 적립금 매칭 및 만기·중도 해지금 지급 등 정부지원금 업무는 중앙자활센터에 위탁하고, 교육·사례관리는 희망키움통장 I 사례관리자를 추가·재배치하고 중앙자활센터와 연계하여 통장 참여자를 통합 관리
-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시스템화·효율화로 지자체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자산형성 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의 필요성 및 구축방향

-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행복e음 및 은행 전산시스템과 전용선으로 연결하여 업무 효율성 및 금융 보안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업무 효율성 제고) 가입자의 매월 적립 및 정부지원금 적립 정보를 시스템 간 자동 확인 및 처리 필요
  - (금융보안 강화) 정보 유출과 위·변조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통장 사업 담당자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 (확장성 지원) 정부지원금 자동 매칭·적립 기능 구현으로 저축액 및 저축기간의 다양화 및 사업 설계 유연화 가능



○ 행정적 관리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실시·수행 주체, 대상(아동, 청년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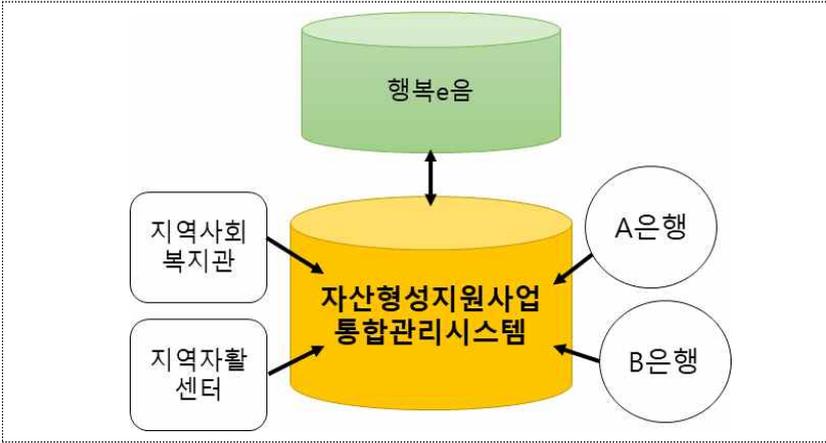
확대되는 상황이나, 사업대상별, 주체별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있고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한정적이거나 미비하며 각 주체마다 관리방법도 상이

- 금융업체가 제공하는 बैं킹시스템, 행정망시스템, 사례관리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거나 수기로 관리

- 이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와 참여자 이력관리 등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단절 없이 실시간으로 일괄처리(one-stop)할 수 있는 단일 창구(single window) 구현 필요

○ 다양한 사업파트너와 협력 가능

- 현재 금융업무의 경우 금융업체에서 제공하는 बैं킹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사례관리의 경우 수기로 관리하는 등 사례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미비함
- 기본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은 참여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행정망과 연계되어있으며, 민간영역에서 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할 경우 시스템 등록 후에 참여자 정보를 연계 받아 서비스 제공 시 활용가능
- 금융 업무의 경우에도 해당 업체의 बैं킹시스템을 직접이용하지 않고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다양한 업체와 협력 가능



- 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저축프로그램 실시 기반 마련
  - 현행 프로그램은 시스템의 한계로 가입 시 약정금액 변경이 불가하고, 가입기간이나 매칭비율이 고정되어 가입자의 욕구에 대한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자산형성 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은 저축액 적립방식(자유적립식 등)이나 자유로운 가입기간 설정, 다양한 매칭비율 및 지원금 추가가 가능하도록 구현
- 사업 평가체계 구축
  - 사업 참여를 통한 저소득층의 탈 수급·탈 빈곤 지원 효과, 빈곤 예방효과, 사업 참여 과정에서의 저축 경험을 통한 인식 및 행태의 변화 측정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나라 자산형성지원 정책의 효과성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 강화로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마련

- 자기 기여형 저축프로그램은 다양화되는 추세로, 이는 보편적 복지 확장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함
  - 영국,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도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지자체별/상품별로 상이하게 되어 보편적 흐름에 어긋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자체별 상품의 다양성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와 새로운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핵심임

○ 통합 사례관리 체계 개편

- 체계적·전문적 사례관리 및 자체진단 평가 시스템 마련
  - (사례관리 일원화) 기존의 3개 통장 및 디딤씨앗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
  - (통합 매뉴얼 구축) 희망키움통장 II 사례관리 절차 준용, 사례관리 성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 종결 단계 추가
  - (자체 진단) 상담내용 등 시스템 입력 데이터를 통해 참여자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진단 평가, 환류가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사례 관리 절차 (안)】

단계	내 용 (예시)
① 초기상담	- 대상자 기본정보(가입경로 등) 및 욕구(가입목적 및 필요 서비스) 파악 - 통장 사업 안내 (지급조건, 적립증지 등 유의사항 등)
② 사정	- 대상자 욕구 사정 - 심화사례관리 여부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안내 및 지원계획 수립 * 심화사례관리 여부는 통합사례관리회의나 내부 사례관리회의에서 판단
③-1 상시 관리	- 매월 본인 적립금 및 장려금 안내
③-2 심화사례 관리	- 심화사례관리 서식 작성(필요욕구, 연계 내용, 진행상황, 결과 등) -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자원 안내 및 연계 (가입기간 중 연 2회 이상)
④ 평가 및 종결	- 만족도 조사 - (심화사례관리) 종결보고서 작성

○ 사례관리자 교육체계 구축

- 자활연수원을 활용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금융복지에 특화된 사례관리자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사례관리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기존의 채무조정 및 상담 이외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산형성 전략 수립 역량 등

□ 자산형성 지원체계 거버넌스 개편의 기대효과

- 전달체계의 간소화로 사업의 효율화 도모 및 금융사고 예방
- 전산화에 대한 간소화 및 인력통합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 자활정보시스템과 하나은행시스템간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마련을 통해 업무적 하중 감소

○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자 배치 확산으로 자산형성 사례관리 전문화 유도 가능

- 기존 사례관리사업 추가 배치와 더불어 광역자활센터 통장Ⅱ인력 재배치를 통해 자활센터의 취약계층 통장 사업 효과성 제고

□ 자산형성 지원체계 운영 거버넌스 관련 기타 고려사항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관리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안 제시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관련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는 공공-민간 협업 체계 등 거버넌스 제시
- 보건복지부를 컨트롤타워로 현행 중앙자활센터 중심 관리 운영체계를 활용하되, 사례관리와 금융교육 등 노후준비지원 사업 연계 등을 고려하여 설계
- 저축계좌 관리 운영, 사례관리 및 교육 연계, 정책홍보 및 민간 채용조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기구 마련 (☞ 자활진흥원 설립과 병행하여 전달체계 개편)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운영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관련 통계 기반 구축 및 평가체계 구축 방안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의 다양한 정책 목표 및 사업 간 연계성 고려하여 행정 데이터 기반 패널 데이터 (Resister-based survey) 구축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가구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가구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의

다양한 정책 대상과 사업 연계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본 설계 및 패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자산형성 지원정책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 활용 추진

- 통계 기반 구축을 통한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연구 수행
  - 자산형성 지원체계 운영을 담당하는 거버넌스 구축 시 관련 통계 기반 구축 및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포럼) 설치 운영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빈곤예방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법” 제정 및 담당 조직 신설 추진
- 미국 IDA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Asset for Independence Act(AFIA)”와 같이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 추진
- 해당 법령 및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담당 부서로 보건복지부 내 “자산형성지원과”를 신설하고 산하 중앙자활센터를 자활진흥원 확대 개편하여 지자체와 연계하여 권역별로 자산형성지원 업무 수행



## 참고문헌 <<

- 김자영·한창근(2016a). 자산수준과 취업여부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장애와 고용*, 26(3), 5-30.
- 김자영·한창근(2016b). 장애인 가구주의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산수준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42(2), 169-190.
- 김자영·한창근(2017). 가구주의 장애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산수준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9(2), 247-269.
- Han, C.-K. (2013). A comparative study of asset-based policy in Asia: Korea, Singapore, and Taiwan.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15(1), 54-67.
- Han, C.-K., Grinstein-Weiss, M., & Sherraden, M. (2009). Assets beyond savings in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Social Service Review*, 83(2) 221-244.
- Han, C.-K., & Rothwell, D. W. (2014). Savings and family functioning during the 2008 recession: An exploratory study with lower income Singaporeans. *International Social Work*, 57(6), 630-644.
- Han, C.-K., & Sherraden, M. (2009). Do institutions really matter for saving among low-income households? A comparative approach. *Journal of Socio-Economics*, 38(3), 475-483.
- Han, C.-K., Ssewamala, F., & Wang, J. S.-H. (2013). Family economic empowerment and mental health among AIDS-affected children living in AIDS-impacted communities: evidence from a randomized evaluation in southwestern Uganda.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67(3), 225-230.
- Hong, S.-I., & Han, C.-K. (in press). An exploratory study of solidier's

- attitudes toward a matched savings program in Korea.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 Nam, Y., & Han, C.-K. (2010). A new approach to promote economic independence among at-risk children: Child Development Accounts (CDAs) in Kore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11), 1548-1554.
- Sherraden, M. (2016). Asset building as policy innovation: Universal Child Development Accounts. *중앙자활센터 자활복지 국제포럼 기조강연. 빈곤정책의 미래를 만나다. 11월 28일.*
-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New York: M.E. Sharpe.
- Ssewamala, F. M., Han, C.-K., & Neilands, T. (2009). Asset ownership and health and mental health functioning among AIDS-orphaned adolescents: Findings from a randomized clinical trial in rural Uganda. *Social Science & Medicine*, 69(2), 191-198.
- Ssewamala, F. M., Han, C.-K., Neilands, T., Ismayilova, L., & Sperber, E. (2010). Effects of economic assets on sexual risk-taking intentions among orphaned adolescents in Ugand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3), 483-488.
- Ssewamala, F. M., Karimli, L., Neilands, T., Wang, J. S-H., Han, C.-K., Ilic, V., & Nabunya, P. (2016). Applying a family-level economic strengthening intervention to improve education and health-related outcomes of school-going AIDS-orphaned children: Lessons from a randomized experiment in Southern Uganda. *Prevention Sciences*, 17(1). 134-143.
- Yadama, G., & Sherraden, M. (1996). Effects of assets on attitudes and behaviors: Advance test of a social policy proposal. *Social Work*

Research, 20(1), 3-11.